

전라남도

2017년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용역

용역보고서

2017. 7. 7

제 출 문

전라남도지사 귀하

본 용역보고서를 “2017년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 7. 7.

정 안 회 계 법 인

대 표 이 사 손 창 환

목 차

용역보고서.....	4
Ⅰ. 총 공급비용 및 단위당 공급비용 요약표.....	7
1. 목포도시가스	7
2. 대화도시가스	7
3. 전남도시가스	8
4. 해양도시가스	8
Ⅱ. 공급비용 산정기준	9
1. 총칙	9
2. 적정원가의 산정.....	11
3. 적정투자보수의 산정	13
4. 공급비용 및 도시가스요금의 책정.....	14
Ⅲ. 총 공급비용 및 단위당 공급비용 산정내역	16
1. 목포도시가스	16
2. 대화도시가스	25
3. 전남도시가스	34
4. 해양도시가스	43
Ⅳ. 용도별 공급비용.....	52
1. 목포도시가스	52
2. 대화도시가스	53
3. 전남도시가스	54
4. 해양도시가스	55
Ⅴ. 과업지시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	56
1. 주택용 기본요금의 적정성 분석 및 대안 제시	56
2. 신규 공급지역(보성군, 고흥군) 용도별 공급비용 산정 대안제시	59
3. 공급비용 단일화 계획 관련 단일요금 적용 시 적정요금과 조정효과 등 분석	60

4. 2016년 전국 용도별 공급비용 편차(최고~최저) 범위 및 지역별 특성 분석	61
5. 도내 공급여건 최적화를 위한 용도별 적정 공급비용과 평균 공급비용 산정 (대안4)	63
6. 신규 용도(연료전지) 및 산업용 요금 부제 확대 적정성 검토 및 방안 제시	65
7. 여수지역 배관 투자재원 관련 검토	66
8. 도시가스 연결·철거비 폐지에 따른 공급비용 인상요인 분석	69
9.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적용 공급비용 인상요인 분석	70
10. 타 시·도별 우수사례 소개, 현황 비교·분석 등	71
11. 경제성이 낮은 도시 내 주택지역 시설투자 확대방안	72
12. 도시가스 보급률 향상을 위한 방안	73
13. 도시가스요금 신용카드 결제방안	74
 별첨 : 부속명세서	 76

용역보고서

전라남도지사 귀하

2017년 7월 7일

폐 회계법인(이하 “법인”)은 전라남도와 체결한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용역 계약에 따라 목포, 대화, 전남, 해양 도시가스(이하 “회사”)가 2017년도에 적용할 도시가스 공급비용의 산정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에 따라 당 법인이 수행한 업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도시가스 회사별 총공급비용 및 단위당 공급비용 제시

- 회사별 도시가스 총공급비용, 적정 투자보수율 및 단위당 공급비용 분석
- 용도별 판매열량, 공급비용 및 대안별 요금적용 사유

나. 도시가스 공급열량 산출 및 검토

- 승인된 추정 공급열량과 실제 공급열량의 차이 검토
- 2016년도 공급비용 산정 시 승인 공급열량과 실제 공급열량과의 차이가 $\pm 3\%$ 를 초과한 경우는 정산하여 2017년도 공급비용에 적용

다. 현행 공급비용에 대한 적정원가 분석 및 대안제시

- 주택용 기본요금 770원에 대한 적정성 분석 및 대안제시
- 자기자본 보수율 및 가산 보수율의 경우, 공급비용 산정기준 개정(2016. 4. 22)안 반영
- 신규 공급지역(보성군, 고흥군) 용도별 공급비용의 적정원가 산정 대안제시

라. 전라남도의 “공급비용 단일화”계획과 관련, 현재 여건에서 단일화가 가능한 용도별 공급비용 및 적용할 적정 공급비용 분석

- 전국 용도별 공급비용 편차(최고~최저)와 용도별 평균 공급비용의 지역별 특성 분석
- 도내 공급여건 최적화를 위한 용도별 적정 공급비용 최소 편차(최고~최저) 범위 및 용도·회사별 평균 공급비용 산정
- 신규 용도(연료전지) 및 산업용 요금 부제 확대 적정성 검토 및 방안 제시

마. 정부정책 등 반영에 대한 공급비용 인상요인 최소화 방안

- 여수지역의 산업용 열량정산분에 대한 세대당 및 배관 1m당 소요된 표본 공사비 산출
 - ① 배관 투자재원으로 활용한 공사내역 및 향후계획 방안 제시
 - ② 판매열량차이 정산분에 대한 배관 투자재원을 1m³ 판매물량으로 산정 방안 제시
- 도시가스 연결·철거비 폐지에 따른 공급비용 인상요인 분석
 - ① 공급권역별 전·출입 세대수와 이에 따른 전체 비용
 - ② 철거비용 폐지로 인상되는 지역별 공급비용과 이에 따른 장·단점 분석
 - ③ 타 시도 적용 사례 조사 및 분석
-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적용 공급비용 인상요인 분석
- 타 시·도별 우수사례 소개, 현황 비교·분석 등
- 도시지역임에도 경제성이 낮은 주택지역에 대한 시설투자 기피에 대한 개선 대안제시
-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공급비용 경감 보전

바. 전라남도 도시가스 보급률 향상을 위한 방안 제시

- 보급률 향상을 위한 타 시도 적용사례 조사 및 대안 제시

사. 도시가스 요금 신용카드 자동이체 결제방안 제시

- 신용카드 자동이체 결제방식이 공급비용에 미치는 영향 및 공급비용 인상요인 분석
- 카드납부 대행수수료 등 일정비용을 공급비용에 반영시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 타 시도 적용 사례조사 및 분석

아. 일반 시설분담금 및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적정여부

- 일반 시설분담금 산식에 의한 적용단가
-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산식에 의한 표준투자비(원/m) 및 경제성확보를 위한 최소 세대수, 세대당 분담금, 적용률 등 산정

당 법인은 상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사가 제시한 과거 재무제표, 경영/산업 정보 및 관련자료 등을 바탕으로 임직원에게 대한 질문과 검토 절차를 취하였습니다. 당 법인이 수행한 절차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기준을 적용한 검토업무가 아니므로 본 보고서에 포함된 회사 제시 자료의 완전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우리는 2017년도 도시가스공급비용에 대하여 어떠한 확신도 표명하지 않습니다.

본 보고서는 2017년도에 적용할 도시가스 공급비용의 산정을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하며 제 3자에게 배포되거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보고서 상의 용역 결과는 용역 기준일 이후의 적용 법규 또는 정책의 변동 등 여러 영향으로 인하여 예측 결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차이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당 법인은 용역 기준일 이후의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본 보고서를 갱신할 책임이 없습니다.

정 안 회 계 법 인

대 표 이 사 손 창 환

I. 총 공급비용 및 단위당 공급비용 요약표

회사가 제시한 2017년의 추정 총공급비용 및 단위당 공급비용에 대한 당 법인의 조정사항을 반영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목포도시가스

(단위: 천원)

항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비 고
A. 적정원가	12,494,538	(1,329,720)	11,164,819	
B. 요금기저	41,942,074	(6,292,716)	35,649,358	
C. 투자보수율	6.88%	0.01%	6.89%	
D. 투자보수	2,885,543	(429,486)	2,456,057	B×C
E. 투자재원	-	-	-	
F. 투자비 정산	-	(1,587)	(1,587)	
G. 총공급비용	15,380,081	(1,760,792)	13,619,289	A+D+E+F
H. 총공급열량(GJ)	5,165,622	(36,147)	5,129,475	
단위열량당공급비용(원/MJ)	2.9774	(0.3223)	2.6551	G÷H

2. 대화도시가스

(단위: 천원)

항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비 고
A. 적정원가	8,227,520	(812,330)	7,415,190	
B. 요금기저	12,010,218	(454,633)	11,555,585	
C. 투자보수율	7.32%	(3.00%)	4.32%	
D. 투자보수	879,688	(379,967)	499,721	B×C
E. 투자재원	2,000,000	(1,100,000)	900,000	
F. 투자비 정산	-	39,124	39,124	
G. 총공급비용	11,107,208	(2,253,173)	8,854,035	A+D+E+F
H. 총공급열량(GJ)	6,027,000	(258,300)	5,768,700	
단위열량당공급비용(원/MJ)	1.8429	(0.3081)	1.5348	G÷H

3. 전남도시가스

(단위: 천원)

항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비 고
A. 적정원가	23,614,072	(3,219,910)	20,394,162	
B. 요금기저	48,887,393	(5,662,826)	43,224,567	
C. 투자보수율	7.20%	0.01%	7.21%	
D. 투자보수	3,520,179	(405,753)	3,114,425	B×C
E. 투자재원	-	-	-	
F. 투자비 정산	-	(96,625)	(96,625)	
G. 총공급비용	27,134,251	(3,722,289)	23,411,962	A+D+E+F
H. 총공급열량(GJ)	9,685,793	218,637	9,904,430	
단위열량당공급비용(원/MJ)	2.8014	(0.4377)	2.3638	G÷H

4. 해양도시가스

(단위: 천원)

항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비 고
A. 적정원가	10,358,070	(389,495)	9,968,575	
B. 요금기저	45,967,814	(932,358)	45,035,455	
C. 투자보수율	7.32%	-	7.32%	
D. 투자보수	3,366,912	(68,290)	3,298,622	B×C
E. 투자재원	1,257,538	(992,538)	265,000	
F. 투자비 정산	-	(61,512)	(61,512)	
G. 총공급비용	14,982,521	(1,511,836)	13,470,685	A+D+E+F
H. 총공급열량(GJ)	5,388,062	-	5,388,062	
단위열량당공급비용(원/MJ)	2.7807	(0.2806)	2.5001	G÷H

II. 공급비용 산정기준

당 법인은 목포, 대화, 전남, 해양 도시가스사가 제시한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2016.4.22 개정) (이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칙

1) 산정기준 제 2 조 (공급비용의 구성)

- ① 공급비용은 사업자의 도시가스 제조/공급, 판매 및 일반관리에 소요되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가스 원재료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 총괄원가는 사업자의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 하에서 도시가스 공급에 소요되는 적정원가에 가스사업에 공여하고 있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투자보수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③ 시.도지사는 도시가스사업의 여건등을 감안, 배관설비의 증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급설비 이용효율제고로 인한 원가인하요인 발생시 그 범위안에서 필요에 따라 별도의 투자재원을 가산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동 재원이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의무화조치 등 사후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④ 도시가스 공급과 관계없는 수탁공사나 가스기기판매 등 부대사업관련 수익 및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⑤ 시.도지사는 당해 지역내 도시가스사의 공급비용 산정시 사업자가 2 이상일 경우 총평균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 사업자별로 산정한다.
- ⑥ 시.도지사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요금경감 등 정부의 정책적 목적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⑦ 시.도지사는 도시가스 연결·철거에 따른 적정 안전점검비용을 공급비용에 반영하여 도시가스 연결·철거시 안전점검비용을 도시가스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징수하지 않도록 한다.

2) 산정기준 제 3 조 (공급비용 산정기간)

- ① 공급비용의 산정기간은 1회계연도를 원칙으로 한다.
- ② 공급비용 산정은 매년 7월 1일까지 확정 및 적용한다. 다만 공급비용 조정이 지연되는 경우 조정일까지의 미회수 또는 초과회수된 공급비용차이를 다음연도의 공급비용 산정시 총괄원가에 반영 할 수 있다.
- ③ 공급비용 산정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의 발생으로 총괄원가에 현저한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증감요인만을 반영하여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3) 산정기준 제 4 조 (원가산정 자료)

- ① 공급비용은 외부감사를 받아 수정사항이 반영된 사업자의 재무제표와 결산서, 요금 계산을 위한 제반 명세서 등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원가산정자료 작성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기관의 공급비용 산정결과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④ 사업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회계자료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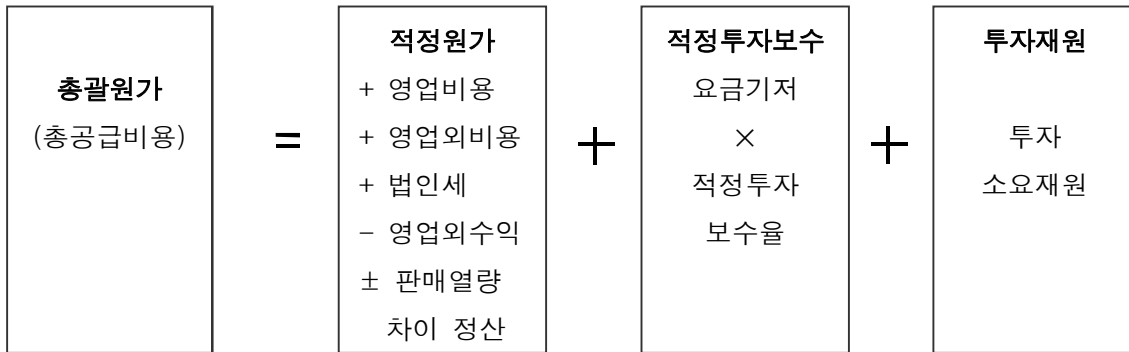
4) 산정기준 제 5 조 (판매열량)

공급비용 산정기간 동안의 판매열량은 시·도지사가 작성한 수급계획, 회사별 판매실적, 회사별 수요예측치, 관련기관의 수요예측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정한다.

5) 산정기준 제 5 조의 2 (판매열량 차이의 정산)

- ① 제5조의 판매열량과 관련하여 추정판매열량과 실제판매열량간에 차이 (이하“판매열량 차이”라 한다)가 $\pm 3\%$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열량 차이를 정산한다.
- ② 정산금액은 시·도지사가 승인한 승인총괄원가와 사업자가 사후적으로 회수한 회수총괄원가의 차이로 계산하며,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른다.
 - 1. 승인총괄원가는 공급비용 승인시 기준이 되는 추정판매량에 승인된 사용량요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 2. 회수총괄원가는 사후적 실적판매열량에 승인된 사용열량요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해 산정된 정산금액은 다음연도 공급비용 산정시 총괄원가에 가감하여 반영한다. 다만, 정산금액이 다음연도 평균공급비용의 현저한 증감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이연하여 반영할 수 있다.
- ④ 직전 회계연도말 현재 도시가스사업으로 인하여 누적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자의 판매열량차이가 $+3\%$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총괄원가의 구성



2. 적정원가의 산정

1) 산정기준 제 6 조 (적정원가의 구성)

적정원가는 영업비용 합계액에 영업외비용과 적정투자보수에 대한 법인세를 가산하고 영업외수익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 산정기준 제 7 조 (영업비용)

영업비용의 각 항목별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인 건 비

1. 저장/기화부문, 공급관리부문, 판매 및 일반관리 부문별 적정 인원수와 정부의 임금정책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인건비는 급여 및 임금, 상여금, 제수당 및 퇴직급여를 포함한다.

②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1.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년수

i) 공급설비(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본관 및 공급관과 이에 부속된 설비를 말함)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으로 하며 내용년수는 자산 취득당시 세법상의 기준내용년수로 산정한다. 다만, 사업자의 회계처리기준 등에 따른 내용년수를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기타의 유형자산은 사업자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상각방법과 내용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ii) 유형자산의 당기 증감분은 기중 평균적으로 증감한 것으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산정한다.

2. 감가상각 대상금액

감가상각 대상금액은 시설분담금, 재평가로 인한 증가분 및 투자자원 등을 제외한 취득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한다.

③ 무형자산상각비

직전년도 무형자산의 미상각잔액과 당해 회계연도 취득예상 무형자산은 잔여상각 내

용년수 동안 매기 균등액을 상각하되 당해 회계연도 취득분은 기중 평균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상각한다.

④ 기타의 영업비용

저장/기화부문, 공급관리부문, 판매 및 일반관리부문으로 구분하여 각 비용 항목별 비용발생 변수를 감안하고 물가변동요인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다만, 접대비 등 관계법령에 법정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비용은 그 한도액 범위내에서 반영하며, 가스계량기 교체비용 중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거 수용가로부터 별도로 징수하는 경우(7등급 초과분)에 발생하는 수익 및 비용을 부대사업관련 수익 및 비용으로 처리하여 영업비용에서 제외한다. 또한, 도시가스회사가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의 위탁에 대한 대가로 고객센터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기타의 영업비용항목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결정한다.

⑤ 고객센터 지급수수료의 결정

도시가스회사가 고객센터에 지급하는 지급수수료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검토하여 정하고 도시가스회사는 결정된 지급수수료 전액을 고객센터에 지급한다. 고객센터 지급수수료는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급여, 상여금, 제수당 및 퇴직급여를 포함),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사무실임차료, 시설투자비 및 고객센터의 운영에 수반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제비용을 포함한 적정원가에 적정이윤을 가산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결정한다.

3) 산정기준 제 8 조 (영업외비용)

- ① 요금기저 항목과의 일관성 등을 감안하여 이자비용, 유가증권 및 투자자산관련 손실 등은 적정원가에 반영하지 아니하며, 기타 도시가스공급과 관련된 영업외비용은 적정원가에 반영한다. (기부금의 경우 도시가스 공급과의 관련성, 지역내 에너지복지 등 사회공헌, 요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적정원가 반영여부를 결정) 다만, 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한 유형자산의 처분 등으로 영업외비용에 현저한 증감을 유발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적절한 방법으로 원가에 반영한다.
- ② 기타 영업외비용은 직전년도 실적금액을 거치하여 반영한다.

4) 산정기준 9 조 (영업외수익)

- ① 요금기저 항목과의 일관성 등을 감안하여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유가증권 및 투자자산관련 이익 등은 적정원가에 반영하지 아니하며, 기타 도시가스공급과 관련된 영업외수익은 적정원가에 반영한다. 다만, 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한 유형자산의 처분 등으로 영업외수익에 현저한 증감을 유발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은 적절한 방법으로 원가에 반영한다.
- ② 기타 영업외수익은 직전년도 실적금액을 거치하여 반영한다.

3. 적정투자보수의 산정

1) 산정기준 제 11 조 (적정투자보수의 구성)

- ① 적정투자보수라 함은 사업자가 도시가스를 제조, 공급하기 위하여 직접 공여하고 있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절한 보수를 의미한다.
- ② 적정투자보수는 요금기저에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산정기준 제 12 조 (요금기저)

- ① 요금기저는 당해 회계연도의 순가동설비자산액, 순무형자산액, 일정분의 건설중인 자산의 기초/기말 평균가액과 일정분의 운전자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도시가스의 제조, 공급에 직접 공여치 아니하는 유헴자산 및 타목적의 자산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 순가동설비자산액은 총가동설비자산액에서 적정원가에 산입되었던 감가상각비누계액 및 증여자산, 시설분담금 및 투자재원과 같이 사업자가 부담치 않은 자본적 수입의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토지와 공급설비의 재평가차익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③ 기초 순가동설비자산액은 직전년도 결산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④ 기말 순가동설비자산액은 기초 순가동설비자산액에 당해 회계연도의 투자계획 및 자산처분계획을 고려한 순증감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공급설비의 순증감액은 「전기 건설중인자산 평균가액 + 당기 투자계획 금액 - 당기 처분자산순액 - 당기중 감가상각비 추정액 - 당기 건설중인자산 평균가액」으로 하며 시설분담금 및 투자재원으로 취득한 자산과 관련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⑤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건설중인자산은 건설중인자산의 회계방법, 상각방법 및 그 규모와 사용자의 기간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한다.
- ⑥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무형자산은 기초가액에 당기상각액 및 당기취득과 처분을 고려한 기말가액의 평균금액으로 한다.
- ⑦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운전자금은 당해 회계연도의 적정영업비용(원재료비 제외)에 감가상각비 등 현금유출이 수반되지 않는 비용을 차감한 금액의 2개월분으로 한다

3) 산정기준 제 13 조 (적정투자보수율)

- ① 적정투자보수율은 자기자본에 대한 보수율과 타인자본에 대한 보수율을 자기자본과 타인자본 구성비로 각각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 가중평균투자보수율에 2%p 내지 3%p를 가산하여 적용하되 이로 인하여 증가되는 세후투자보수 상당액을 미공급지역 및 소외지역 도시가스 보급을 위하여 투자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율을 3%p 이내로 할 수 있다.
 - 1. 도시가스사 중 직전년도 도시가스보급률(공급권역내 공급가구/공급권역내 공급가능가구수)이 전국평균보급률 미만인 경우
 - 2. 도시가스보급률이 전국평균보급률을 상회하더라도 공급권역 내 미공급지역 및

소외지역의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 ② 자기자본에 대한 세후보수율은 예금금리 등으로 적정하게 산정한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③ 타인자본에 대한 보수율은 직전년도 차입금 평균월말잔액(수용가 시설전대 차입금은 제외)으로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나누어 구한 율에 법인세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단, 사업부제 형태의 회사는 동조 제⑤항에서 산출된 타인자본으로 관련이자를 나누어 구한 율로 한다.
- ④ 자기자본은 「유상증자 누계액 + 당기순이익 누계액(결손금 제외) - 배당금 누계액」으로 하되 제외되는 결손금은 최초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기 이전의 결손금에 한한다. 단, 사업부제 형태의 회사는 회사전체의 자기자본에서 시설분담금 누계액을 차감한 기초/기말 평균가액을 사업부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 ⑤ 타인자본은 직전년도 차입금 평균 월말잔액으로 하되, 직전년도 차입금은 당좌차월,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부채, 장기차입금 및 사채 등으로 한다. 단, 사업부제 형태의 회사는 사업부 고유 평균차입금과 회사전체 평균차입금을 사업부 자산가액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적정투자보수 = 요금기저 × 적정투자보수율

요금기저 = 순가동설비자산액 + 순무형자산액 + 평균건설중인자산 + 운전자금 2개월분

적정투자보수율 = 자기자본에 대한 보수율 × 자기자본 구성비 + 타인자본에 대한 보수율
× 타인자본 구성비

4. 공급비용 및 도시가스요금의 책정

1) 산정기준 제 14 조 (요금의 책정)

- ① 공급비용의 단가는 총괄원가를 당해연도의 판매열량으로 나누어 산정하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② 시·도지사는 가스요금을 단일요금체계, 2 부제요금체계 등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에서 사용하는 용도(취사전용, 난방전용, 취사난방용 등)는 2 부제요금체제로 하고 그 외의 용도는 용도별 특성에 따라 적정한 요금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
- ③ 2 부제요금체계는 다음과 같이 기본요금과 사용량요금으로 구성된다.
 - 1. 기본요금은 수용가당 일정하게 발생하는 비용으로 공급관 감가상각비, 검침비, 고지서 발행비, 송달비, 수납수수료, 안전점검비, 계량기교체비 등을 기초로 산정 하되, 기본요금 수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상기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 2. 사용열량요금은 원재료비에 기본요금으로 회수되는 금액을 차감한 공급비용을 판매열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 ④ 냉방용 소매공급비용은 냉방용 가스공급에 소요된 적정한 원가를 부과하여야 한다.

2) 산정기준 제 15 조 (도시가스 요금수준)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수준은 원재료비에 총괄원가를 기초로 한 공급비용 단가를 더하여 책정한다.

Ⅲ. 총 공급비용 및 단위당 공급비용 산정내역

1. 목포도시가스

1) 적정원가

목포도시가스사는 목포시, 무안군, 영암군, 강진군을 동일 공급권역으로 분류하여 공급비용을 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적정원가 및 추정 공급열량 역시 목포, 무안, 영암, 강진 4개 지역에 대해 산출되었습니다.

금년 적정원가 산정내역은 개별 항목별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A)영업비용	11,556,096	(1,306,272)	10,249,824
인건비	3,749,313	(212,134)	3,537,179
감가상각비	2,966,144	(193,384)	2,772,760
기타영업비용	4,840,639	(900,754)	3,939,885
(B)영업외비용	17,200	-	17,200
(C)영업외수익	-	-	-
(D)법인세비용	921,242	(228,508)	692,734
(E)사회적 배려대상자 감면액 등	-	205,060	205,060
(F)LPG제조설비 특별손익	-	-	-
(G)현저한차이 반영전 적정원가(A+B-C+D+E±F)	12,494,538	(1,329,720)	11,164,819
(H)영업외수익·비용 이연반영금액	-	-	-
(I)영업외수익·비용 이연반영후 적정원가(G+H)	12,494,538	(1,329,720)	11,164,819
(J)2016년 열량정산반영(*)	-	-	-
(K)적정원가(I+J)	12,494,538	(1,329,720)	11,164,819

(*) 2016년 추정 판매열량 대비 실제 판매열량 차이에 대한 정산반영 여부

(단위: GJ, %)

구 분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1. 정산대상열량			
1-㉠ 추정판매량	5,152,811	-	5,152,811
1-㉡ 실제판매량	5,029,105	-	5,029,105
1-㉢ 허용오차율($\pm 3\%$)	3.00%	-	3.00%
1-㉣ 판매량차이($(\text{㉡})-(\text{㉠})$)	(123,706)	-	(123,706)
1-㉤ 허용오차범위($(\text{㉡}) \times (\text{㉢})$)	(150,873)	-	(150,873)
1-㉥ 허용오차초과여부	미달		미달
2. 총 정산대상금액	-	-	-
3. 이연 대상금액	-	-	-
4. 전년 이월된 금액	-	-	-
5. 금년 정산반영액($2.-3.+4.$)	-	-	-

가. 인건비

조정내역 :

인건비는 합리적인 인원증감을 반영하여 부문별 적정인원수를 산정하고, 급여 인상률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2017년 평균임금상승률 예측치인 3.50%를 적용하고 회사의 인건비 지급규정 등을 반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퇴직급여는 조정된 인건비를 근거로 퇴직금 지급 규정상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의 금년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정후금액 :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급여	2,939,987	(168,291)	2,771,696
상여금	273,674	(21,200)	252,474
제수당	179,627	(8,980)	170,647
잡급	28,834	-	28,834
퇴직급여	327,191	(13,663)	313,528
합 계	3,749,313	(212,134)	3,537,179

나. 감가상각비

조정내역 :

감가상각비는 가스사업과 비가스사업에 대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안분, 공급설비 기초가액과 금년 감가상각비의 재계산 및 투자계획 중 공급설비의 집행가능성이 낮은 금액을 차기 연도로 이월함에 따른 관련 자산의 감가상각비 조정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건물	40,135	(7,810)	32,325
구축물	6,031	(1,025)	5,006
기계장치	11,386	(664)	10,722
공급설비	2,613,816	(155,347)	2,458,469
차량운반구	32,423	(2,604)	29,818
기타의 유형자산	110,099	(25,934)	84,166
무형자산	152,254	-	152,254
합 계	2,966,144	(193,384)	2,772,760

다. 기타영업비용

조정내역 :

기타 영업비용은 최근 5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1.29%를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이중 일부 항목은 회사의 경영계획을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발생비용만을 고려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상된 기타영업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후금액 :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복리후생비	396,902	(48,312)	348,590
여비교통비	132,814	(2,205)	130,609
차량유지비	94,573	(5,223)	89,350
통신비	71,202	(1,177)	70,025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수도광열비	82,372	(1,362)	81,010
소모품비	520,932	(236,796)	284,136
세금과공과	425,890	(15,000)	410,890
지급임차료	87,202	(358)	86,844
운반비	106,613	(1,769)	104,844
수선비	332,595	(59,278)	273,317
보험료	95,474	(733)	94,741
접대비	74,207	(1,228)	72,979
회의비	-	-	-
광고선전비	78,068	(62,363)	15,705
경상개발비	-	-	-
교육훈련비	14,261	(2,895)	11,366
도서인쇄비	66,308	(9,363)	56,945
지급수수료(*)	2,060,071	(252,690)	1,807,381
대손상각비	200,000	(200,000)	-
잡비	1,155	(2)	1,153
계	4,840,639	(900,754)	3,939,885

(*) 지급수수료에는 고객센터 지급수수료를 포함함.

라. 영업외수익,비용**조정내역 :**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8조에 의하면, 요금기저 항목과의 일관성 등을 감안하여 이자비용, 유가증권 및 투자자산 관련 손실 등은 적정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기타 도시가스공급과 관련된 영업외비용은 적정원가에 산입합니다. 또한, 제9조에 의하면, 요금기저 항목과의 일관성 등을 감안하여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유가증권 및 투자자산관련 이익 등은 적정원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기타 도시가스공급과 관련된 영업외수익은 적정원가에 산입합니다. 영업외수익, 비용의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후금액 :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영업외비용	17,200	-	17,200
영업외수익	-	-	-

마. 사회적 배려대상자 감면 등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2조 6항에 의한 사회적 배려대상자 요금 감면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가구, 천원)

구 분	예상 가구수	금 액	비 고
장애인	2,023	82,002	
기초수급자 등	2,228	78,395	
차상위	912	16,693	
다자녀	2,419	27,970	
합 계	7,582	205,060	

바. 법인세비용

조정내역 :

법인세비용은 회사제시 요금기저 및 투자보수율에 당 회계법인의 조정사항을 반영한 투자보수를 재계산 한 후 산정하였습니다.

조정후금액 :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세후투자보수 ①	2,885,543	(429,486)	2,456,057
법인세율 ②	24.20%	(2.20%)	22.00%
세전투자보수 ③=①/(1-②)	3,806,785	(657,994)	3,148,791
법인세비용 ③-①	921,242	(228,508)	692,734

2) 요금기저

금년도 요금기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운전자금	1,311,436	(69,471)	1,241,965
유형자산	40,137,187	(6,174,744)	33,962,442
무형자산	406,562	-	406,562
임차보증금	86,889	(48,500)	38,389
합 계	41,942,074	(6,292,716)	35,649,358

가. 운전자금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운전자금은 금년추정 영업비용(원료비제외)에서 감가상각비, 퇴직급여, 대손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등을 차감한 금액의 2개월분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나. 유형자산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유형자산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A)전기말 미상각잔액	37,229,468	(4,799,670)	32,429,798
당기증가 계획치	4,318,092	(1,244,573)	3,073,519
당기감소 계획치	-	-	-
당기 감가상각비	2,813,890	(193,384)	2,620,506
(B)당기말 미상각잔액	38,733,670	(5,850,859)	32,882,810
(C)평균 미상각잔액 $[(A+B) \div 2]$	37,981,569	(5,325,265)	32,656,304
(D)토지재 평가차익	-	-	-
(E)건설중인자산 상당액	2,155,618	(849,480)	1,306,138
(F)비가스사업용자산	-	-	-
유형자산계 $[C-D+E-F]$	40,137,187	(6,174,745)	33,962,442

다. 무형자산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무형자산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A)전기말 미상각잔액	235,189	-	235,189
당기증가 계획치	495,000	-	495,000
당기감소 계획치	-	-	-
당기상각비	152,254	-	152,254
(B)당기말 미상각잔액	577,935	-	577,935
(C)평균 미상각잔액 $[(A+B) \div 2]$	406,562	-	406,562
(D)비가스사업용자산	-	-	-
무형자산계(C-D)	406,562	-	406,562

라. 임차보증금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임차보증금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A)전기말 잔액	36,889	-	36,889
당기증가 계획치	100,000	(97,000)	3,000
당기감소 계획치	-	-	-
(B)당기말 잔액	136,889	(97,000)	39,889
(C)평균 잔액 $[(A+B) \div 2]$	86,889	(48,500)	38,389
(D)비가스사업용자산	-	-	-
임차보증금계(C-D)	86,889	(48,500)	38,389

3) 투자보수율

금년도의 적정투자보수율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가중평균하여 산정하였으며, 자기자본에 대한 세후 보수율은 예금금리등으로 적정하게 산정한 기회비용 및 도시가스사업자로서 직전년도 도시가스보급률이 전국 평균보급률 80.70%에 미달함에 따라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설비 투자 증대를 유도하고 보급률을 증대시키기 위해 3%의 가산율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항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자기자본	37,977,171	—	37,977,171
타인자본	8,322,580	—	8,322,580
자기자본수익률	4.32%	—	4.32%
타인자본수익률	1.85%	0.05%	1.90%
가중평균투자보수율	3.88%	0.01%	3.89%
투자보수율가산	3.00%	—	3.00%
적정투자보수율	6.88%	0.01%	6.89%

4) 공급열량의 산출

회사의 최근 3개년 공급열량 실적과 2017년 추정열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GJ)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수정후)
공급열량	4,645,093	4,863,602	5,029,105	5,129,475
증가열량	(56,818)	218,509	165,503	100,370
증 가 율	-0.05%	4.70%	3.40%	2.00%

(*) 당기 추정열량은 보급지역 확대에 의한 주택용 증가에 기인합니다.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5조 2 (판매량 차이의 정산)에 의하여 일정차이(±3%) 발생 시에 판매열량정산이 이루어짐에 따라, 금년 4월까지의 실적에 5월부터 금년말까지의 계획 열량을 가산하여 산정한 회사의 제시열량을 인정하였으며,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실적열량

(단위: GJ)

월	1	2	3	4	실적열량계
열량	727,861	663,340	562,817	384,318	2,338,336

나. 공급계획열량

(단위: GJ)

월	5	6	7	8	9
열량	340,181	290,560	264,394	235,047	229,002
월	10	11	12	추정열량계	
열량	300,890	462,195	668,871	2,791,139	

다. 금년도 추정공급열량

$$2,338,336\text{GJ} + 2,791,139\text{GJ} = 5,129,475\text{GJ}$$

2. 대화도시가스

1) 적정원가

대화도시가스는 여수지역을 공급권역으로 하여 공급함에 따라 공급비용을 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적정원가 및 추정 공급열량 역시 여수지역에 대해 산출되었습니다.

금년 적정원가 산정내역은 개별 항목별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A)영업비용	7,160,203	(653,644)	6,506,560
인건비	3,960,336	(689,040)	3,271,296
감가상각비	856,147	187,435	1,043,582
기타영업비용	2,343,721	(152,039)	2,191,682
(B)영업외비용	-	-	-
(C)영업외수익	24,000	-	24,000
(D)법인세비용	280,850	(139,903)	140,947
(E)사회적 배려대상자 감면액 등	242,863	(18,783)	224,080
(F)LPG제조설비 특별손익	-	-	-
(G)현저한차이 반영전 적정원가(A+B-C+D+E±F)	7,659,917	(812,330)	6,847,587
(H)영업외수익·비용 이연반영금액	-	-	-
(I)영업외수익·비용 이연반영후 적정원가(G+H)	7,659,917	(812,330)	6,847,587
(J)2016년 열량정산반영(*)	567,603	-	567,603
(K)적정원가(I+J)	8,227,520	(812,330)	7,415,190

(*) 2016년 추정 판매열량 대비 실제 판매열량 차이에 대한 정산반영 여부

(단위: GJ, %)

구 분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1. 정산대상열량			
1-㉠ 추정판매량	6,027,000	-	6,027,000
1-㉡ 실제판매량	5,760,651	-	5,760,651
1-㉢ 허용오차율($\pm 3\%$)	3.00%	-	3.00%
1-㉣ 판매량차이($(\text{㉡})-(\text{㉠})$)	(266,349)	-	(266,349)
1-㉤ 허용오차범위($(\text{㉠}) \times (\text{㉢})$)	(172,820)	-	(172,820)
1-㉥ 허용오차초과여부	초과		초과
2. 총 정산대상금액	567,603	-	567,603
3. 이연 대상금액	-	-	-
4. 전년 이월된 금액	-	-	-
5. 금년 정산반영액(2.-3.+4.)	567,603	-	567,603

가. 인건비

조정내역 :

인건비는 합리적인 인원증감을 반영하여 부문별 적정인원수를 산정하고, 급여 인상률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2017년 평균임금상승률 예측치인 3.50%를 적용하고 회사의 인건비 지급규정 등을 반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퇴직급여는 조정된 인건비를 근거로 퇴직금 지급 규정상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의 금년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정후금액 :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급여	2,685,444	(685,117)	2,000,327
상여금	601,206	(16,346)	584,860
제수당	242,567	1	242,568
퇴직급여	431,119	12,422	443,541
합 계	3,960,336	(689,040)	3,271,296

나. 감가상각비

조정내역 :

감가상각비는 가스사업과 비가스사업에 대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안분, 공급설비 기초가액과 금년 감가상각비의 재계산 및 투자계획 중 공급설비의 집행가능성이 낮은 금액을 차기 연도로 이월함에 따른 관련 자산의 감가상각비 조정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건물	-	20,057	20,057
구축물	-	250	250
기계장치	-	988	988
공급설비	850,695	(21,414)	829,281
차량운반구	-	-	-
기타의 유형자산	5,452	187,554	193,006
무형자산	-	-	-
합 계	856,147	187,435	1,043,582

다. 기타영업비용

조정내역 :

기타 영업비용은 최근 5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1.29%를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이중 일부 항목은 회사의 경영계획을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발생비용만을 고려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상된 기타영업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후금액 :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복리후생비	335,400	(2,333)	333,067
여비교통비	5,837	(40)	5,797
차량유지비	90,595	(630)	89,965
통신비	43,251	(301)	42,950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전력비	10,868	(75)	10,793
소모품비	125,520	(874)	124,646
세금과공과	224,228	(1,561)	222,667
수선비	9,616	(67)	9,549
보험료	29,491	(205)	29,286
접대비	15,751	(110)	15,641
경조비	3,673	(26)	3,647
교육훈련비	3,959	(28)	3,931
도서인쇄비	50,869	(353)	50,516
지급수수료(*)	1,378,895	(137,380)	1,241,515
사무용품비	4,899	(34)	4,865
대손상각비	8,000	(8,000)	-
잡비	2,867	(20)	2,847
계	2,343,721	(152,039)	2,191,682

(*) 지급수수료에는 고객센터 지급수수료를 포함함.

라. 영업외수익,비용

조정내역 :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8조에 의하면, 요금기저 항목과의 일관성 등을 감안하여 이자비용, 유가증권 및 투자자산 관련 손실 등은 적정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기타 도시가스공급과 관련된 영업외비용은 적정원가에 산입합니다. 또한, 제9조에 의하면, 요금기저 항목과의 일관성 등을 감안하여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유가증권 및 투자자산관련 이익 등은 적정원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기타 도시가스공급과 관련된 영업외수익은 적정원가에 산입합니다. 영업외수익, 비용의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후금액 :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영업외비용	-	-	-
영업외수익	24,000	-	24,000

마. 사회적 배려대상자 감면 등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2조 6항에 의한 사회적 배려대상자 요금 감면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가구, 천원)

구 분	예상 가구수	금 액	비 고
장애인	1,705	82,682	
기초수급자 등	2,480	104,148	
유공자	33	1,703	
차상위	513	11,954	
다자녀	2,001	23,593	
합 계	6,732	224,080	

바. 법인세비용

조정내역 :

법인세비용은 회사제시 요금기저 및 투자보수율에 당 회계법인의 조정사항을 반영한 투자보수를 재계산 한 후 산정하였습니다.

조정후금액 :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세후투자보수 ①	879,688	(379,967)	499,721
법인세율 ②	24.20%	(2.20%)	22.00%
세전투자보수 ③=①/(1-②)	1,160,539	(519,871)	640,668
법인세비용 ③-①	280,850	(139,903)	140,947

2) 요금기저

금년도 요금기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운전자금	977,490	(71,715)	905,774
유형자산	11,032,729	(382,918)	10,649,811
무형자산	-	-	-
임차보증금	-	-	-
합 계	12,010,218	(454,633)	11,555,585

가. 운전자금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운전자금은 금년추정 영업비용(원료비제외)에서 감가상각비, 퇴직급여, 대손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등을 차감한 금액의 2개월분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나. 유형자산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유형자산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A)전기말 미상각잔액	10,371,346	187,194	10,558,540
당기증가 계획치	1,787,586	(952,790)	834,796
당기감소 계획치	-	-	-
당기 감가상각비	856,147	187,435	1,043,582
(B)당기말 미상각잔액	11,302,785	(953,030)	10,349,755
(C)평균 미상각잔액[(A+B)÷2]	10,837,065	(382,917)	10,454,148
(D)토지재평가차익	-	-	-
(E)건설중인자산 상당액	195,663	-	195,663
(F)비가스사업용자산	-	-	-
유형자산계[C-D+E-F]	11,032,728	(382,917)	10,649,811

다. 무형자산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무형자산은 없습니다.

라. 임차보증금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임차보증금은 없습니다.

3) 투자보수율

금년도의 적정투자보수율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가중평균하여 산정하였으며, 자기자본에 대한 세후 보수율은 예금금리등으로 적정하게 산정한 기회비용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항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자기자본	19,983,676	-	19,983,676
타인자본	-	-	-
자기자본수익률	4.32%	-	4.32%
타인자본수익률	0.00%	-	0.00%
가중평균투자보수율	4.32%	-	4.32%
투자보수율가산	3.00%	(3.00%)	0.00%
적정투자보수율	7.32%	-	4.32%

4) 투자재원

투자재원은 도시가스사업의 여건 등을 감안, 배관설비의 증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급설비 이용효율 제고로 인한 원가 인하요인 발생시 그 범위 안에서 필요에 따라 총괄원가 외에 시·도시자가 별도의 투자재원을 가산할 수 있습니다.

대화도시가스사의 경우 장기 공급계획에 따른 배관 투자계획과 경제성 미달 지역에 대한 보급률 증대를 감안하고 공급비용의 급격한 변동 및 인접 지역과의 과도한 공급비용 차이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회사의 배관 투자계획을 감안하여 금번 공급비용 산정 시 900,000천원의 투자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전년까지 회사의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시 반영된 투자재원과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투자재원	사용금액	잔액
2009년	2,284,176	1,104,441	1,179,735
2010년	1,759,398	191,697	1,567,701
2011년	1,500,000	508,777	991,223
2012년	1,920,100	2,146,592	(226,492)
2013년	4,000,000	2,121,655	1,878,345
2014년	7,174,014	2,087,351	5,086,663
2015년	4,737,000	7,191,816	(2,454,816)
2016년	2,316,500	3,262,927	(946,427)
합계	25,691,188	18,615,256	7,075,932

투자재원으로 취득한 공급설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배관투자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나 수요가에서 경제성 확보를 위해 배관공사비를 일부 부담(시설분담금)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해당 공급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적정원가에 산입하지 않고 투자보수가 산정되는 요금기저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투자재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미사용할 경우 환수대상에 해당합니다.

상기 투자재원은 현재 해당 재원을 별도 계좌에 예치 관리하여 타 용도로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여수시를 통한 적재적소의 투자를 유도하여 도시가스 보급과 관련한 장기 민원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5) 공급열량의 산출

회사의 최근 3개년 공급열량 실적과 2017년 추정열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GJ)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수정후)
공급열량	6,966,738	5,638,517	5,760,652	5,768,700
증가열량	(1,701,770)	(1,328,221)	122,135	8,048
증 가 율	-19.66%	-19.07%	2.17%	0.14%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5조 2 (판매량 차이의 정산)에 의하여 일정차이(±3%) 발생 시에 판매열량정산이 이루어짐에 따라, 금년 4월까지의 실적에 5월부터 금년말까지의 계획

열량을 가산하여 산정한 회사의 제시열량을 인정하였으며,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실적열량

(단위: GJ)

월	1	2	3	4	실적열량계
열량	773,450	666,563	583,526	512,006	2,535,545

나. 공급계획열량

(단위: GJ)

월	5	6	7	8	9
열량	432,519	371,554	341,533	342,869	337,562
월	10	11	12	추정열량계	
열량	380,439	466,700	559,979	3,233,155	

다. 금년도 추정공급열량

$$2,535,545\text{GJ} + 3,233,155\text{GJ} = 5,768,700\text{GJ}$$

3. 전남도시가스

1) 적정원가

전남도시가스사는 기존 공급권역인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5개 지역 외에 고흥군을 공급함에 따라 6개 지역을 동일 공급 권역으로 분류하여 공급비용을 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적정원가 및 추정 공급열량 역시 순천, 광양, 곡성, 구례, 보성, 고흥 6개 지역에 대해 산출되었습니다.

금년 적정원가 산정내역은 개별 항목별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A)영업비용	21,485,588	(2,878,506)	18,607,083
인건비	6,039,479	(213,335)	5,826,144
감가상각비	3,335,494	352,552	3,688,046
기타영업비용	12,110,616	(3,017,723)	9,092,893
(B)영업외비용	230,000	(15,000)	215,000
(C)영업외수익	-	29,856	29,856
(D)법인세비용	1,123,856	(245,429)	878,428
(E)사회적 배려대상자 감면액 등	774,628	(51,120)	723,508
(F)LPG제조설비 특별손익	-	-	-
(G)현저한차이 반영전 적정원가(A+B-C+D+E±F)	23,614,072	(3,219,910)	20,394,162
(H)영업외수익·비용 이연반영금액	-	-	-
(I)영업외수익·비용 이연반영후 적정원가(G+H)	23,614,072	(3,219,910)	20,394,162
(J)2016년 열량정산반영(*)	-	-	-
(K)적정원가(I+J)	23,614,072	(3,219,910)	20,394,162

(*) 2016년 추정 판매열량 대비 실제 판매열량 차이에 대한 정산반영 여부

(단위: GJ, %)

구 분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1. 정산대상열량			
1-㉠ 추정판매량	9,226,695	-	9,226,695
1-㉡ 실제판매량	9,254,025	-	9,254,025
1-㉢ 허용오차율($\pm 3\%$)	3.00%	-	3.00%
1-㉣ 판매량차이($(\text{㉡})-(\text{㉠})$)	27,330	-	27,330
1-㉤ 허용오차범위($(\text{㉡}) \times (\text{㉢})$)	277,621	-	277,621
1-㉥ 허용오차초과여부	미달		미달
2. 총 정산대상금액	-	-	-
3. 이연 대상금액	-	-	-
4. 전년 이월된 금액	-	-	-
5. 금년 정산반영액($2.-3.+4.$)	-	-	-

가. 인건비

조정내역 :

인건비는 합리적인 인원증감을 반영하여 부문별 적정인원수를 산정하고, 급여 인상률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2017년 평균임금상승률 예측치인 3.50%를 적용하고 회사의 인건비 지급규정 등을 반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퇴직급여는 조정된 인건비를 근거로 퇴직금 지급 규정상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의 금년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정후금액 :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급여	3,701,083	(130,520)	3,570,563
상여금	1,703,174	(64,726)	1,638,448
제수당	231,151	(8,783)	222,368
퇴직급여	404,070	(9,305)	394,765
합 계	6,039,479	(213,335)	5,826,144

나. 감가상각비

조정내역 :

감가상각비는 가스사업과 비가스사업에 대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안분, 공급설비 기초가액과 금년 감가상각비의 재계산 및 투자계획 중 공급설비의 집행가능성이 낮은 금액을 차기 연도로 이월함에 따른 관련 자산의 감가상각비 조정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건물	232,483	(149,771)	82,712
구축물	1,373	(901)	472
공급설비	2,979,614	230,295	3,209,909
차량운반구	12,775	59,455	72,230
기타의 유형자산	(32,571)	265,529	232,958
무형자산	141,821	(52,055)	89,766
합 계	3,335,494	352,552	3,688,046

다. 기타영업비용

조정내역 :

기타 영업비용은 최근 5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1.29%를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이 중 일부 항목은 회사의 경영계획을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발생비용만을 고려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상된 기타영업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후금액 :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복리후생비	1,439,056	(143,969)	1,295,087
여비교통비	73,101	(2,919)	70,182
차량유지비	132,076	(16,094)	115,982
통신비	427,241	(108,100)	319,141
수도광열비	108,945	(678)	108,267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소모품비	430,364	(236,550)	193,814
세금과공과	405,807	-	405,807
임차료	194,996	(1,064)	193,932
수선비	1,279,536	(894,879)	384,657
보험료	37,694	(262)	37,432
접대비	118,208	(13,179)	105,029
회의비	17,584	(1,961)	15,623
광고선전비	38,925	(20)	38,905
교육훈련비	64,826	(29,343)	35,483
도서인쇄비	31,416	(174)	31,242
지급수수료(*)	6,491,784	(1,224,931)	5,266,853
용구손료	775,683	(320,773)	454,910
대손상각비	20,251	(20,251)	-
잡비	23,125	(2,578)	20,547
계	12,110,616	(3,017,723)	9,092,893

(*) 지급수수료에는 고객센터 지급수수료를 포함함.

라. 영업외수익,비용

조정내역 :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8조에 의하면, 요금기저 항목과의 일관성 등을 감안하여 이자비용, 유가증권 및 투자자산 관련 손실 등은 적정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기타 도시가스공급과 관련된 영업외비용은 적정원가에 산입합니다. 또한, 제9조에 의하면, 요금기저 항목과의 일관성 등을 감안하여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유가증권 및 투자자산관련 이익 등은 적정원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기타 도시가스공급과 관련된 영업외수익은 적정원가에 산입합니다. 영업외수익, 비용의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후금액 :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영업외비용	230,000	(15,000)	215,000
영업외수익	-	29,856	29,856

마. 사회적 배려대상자 감면 등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2조 6항에 의한 사회적 배려대상자 요금 감면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가구, 천원)

구 분	예상 가구수	금 액	비 고
기초수급자 등	1,638	237,293	
장애인, 유공자	2,500	375,871	
차상위	481	36,140	
다자녀	2,279	54,137	
사회복지시설	181	20,067	
합 계	7,079	723,508	

바. 법인세비용

조정내역 :

법인세비용은 회사제시 요금기저 및 투자보수율에 당 회계법인의 조정사항을 반영한 투자보수를 재계산 한 후 산정하였습니다.

조정후금액 :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세후투자보수 ①	3,520,179	(405,753)	3,114,425
법인세율 ②	24.20%	(2.20%)	22.00%
세전투자보수 ③=①/(1-②)	4,644,035	(651,182)	3,992,853
법인세비용 ③-①	1,123,856	(245,429)	878,428

2) 요금기저

금년도 요금기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운전자금	3,005,127	(518,621)	2,486,506
유형자산	45,191,654	(5,054,600)	40,137,054
무형자산	690,612	(412,815)	277,796
임차보증금	-	323,210	323,210
합 계	48,887,393	(5,662,826)	43,224,567

가. 운전자금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운전자금은 금년추정 영업비용(원료비제외)에서 감가상각비, 퇴직급여, 대손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등을 차감한 금액의 2개월분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나. 유형자산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유형자산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A)전기말 미상각잔액	41,472,623	(3,071,601)	38,401,022
당기증가 계획치	9,720,830	(3,427,318)	6,293,512
당기감소 계획치	-	-	-
당기 감가상각비	3,529,861	68,419	3,598,280
(B)당기말 미상각잔액	47,663,592	(6,567,338)	41,096,254
(C)평균 미상각잔액[(A+B)÷2]	44,568,108	(4,819,470)	39,748,638
(D)토지재평가차익	-	-	-
(E)건설중인자산상당액	623,546	(235,130)	388,416
(F)비가스사업용자산	-	-	-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유형자산계[C-D+E-F]	45,191,654	(5,054,600)	40,137,054

다. 무형자산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무형자산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A)전기말 미상각잔액	731,920	(439,391)	292,529
당기증가 계획치	60,300	-	60,300
당기감소 계획치	-	-	-
당기상각비	142,917	(53,152)	89,766
(B)당기말 미상각잔액	649,303	(386,240)	263,063
(C)평균 미상각잔액[(A+B)÷2]	690,612	(412,816)	277,796
(D)비가스 사업용자산	-	-	-
무형자산계(C-D)	690,612	(412,816)	277,796

라. 임차보증금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임차보증금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A)전기말 잔액	-	243,210	243,210
당기증가 계획치	-	160,000	160,000
당기감소 계획치	-	-	-
(B)당기말 잔액	-	403,210	403,210
(C)평균 잔액[(A+B)÷2]	-	323,210	323,210
(D)비가스 사업용자산	-	-	-
임차보증금계(C-D)	-	323,210	323,210

3) 투자보수율

금년도의 적정투자보수율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가중평균하여 산정하였으며, 자기자본에 대한 세후 보수율은 예금금리등으로 적정하게 산정한 기회비용 및 도시가스사업자로서 직전년도 도시가스보급률이 전국 평균보급률 80.70%에 미달함에 따라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설비 투자 증대를 유도하고 보급률을 증대시키기 위해 3%의 가산율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항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자기자본	45,181,415	—	45,181,415
타인자본	3,170,895	—	3,170,895
자기자본수익률	4.32%	—	4.32%
타인자본수익률	2.43%	0.08%	2.51%
가중평균투자보수율	4.20%	0.01%	4.21%
투자보수율가산	3.00%	—	3.00%
적정투자보수율	7.20%	0.01%	7.21%

4) 공급열량의 산출

회사의 최근 3개년 공급열량 실적과 2017년 추정열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GJ)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공급열량	8,919,517	8,558,659	9,254,025	9,904,430
증가열량	428,541	(360,858)	695,366	650,405
증 가 율	5.05%	-4.05%	8.12%	7.03%

(*) 당기 추정열량은 산업용 물량의 증가와 보급지역 확대에 의한 주택용 증가에 기인합니다.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5조 2 (판매량 차이의 정산)에 의하여 일정차이(±3%) 발생 시에 판매열량정산이 이루어짐에 따라, 금년 4월까지의 실적에 5월부터 금년말까지의 계획 열량을 가산하여 산정한 회사의 제시열량을 인정하였으며,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실적열량

(단위: GJ)

월	1	2	3	4	실적열량계
열량	1,212,160	1,162,568	979,437	783,711	4,137,876

나. 공급계획열량

(단위: GJ)

월	5	6	7	8	9
열량	680,224	612,097	538,202	566,181	529,581
월	10	11	12	추정열량계	
열량	667,197	990,680	1,182,392	5,766,554	

다. 금년도 추정공급열량

$$4,137,876\text{GJ} + 5,766,554\text{GJ} = 9,904,430\text{GJ}$$

4. 해양도시가스

1) 적정원가

해양도시가스사는 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장성군, 함평군, 영광군, 해남군 및 장흥군을 공급권역으로 하여 공급함에 따라 8개 지역을 동일 공급권역으로 분류하여 공급비용을 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적정원가 및 추정 공급열량 역시 8개 지역에 대해 산출되었습니다.

금년 적정원가 산정내역은 개별 항목별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A)영업비용	9,298,126	(370,234)	8,927,892
인건비	2,522,510	(97,494)	2,425,016
감가상각비	2,974,623	(28,987)	2,945,636
기타영업비용	3,800,993	(243,753)	3,557,240
(B)영업외비용	101,031	-	101,031
(C)영업외수익	97,970	-	97,970
(D)법인세비용	949,642	(19,261)	930,381
(E)사회적 배려대상자 감면액 등	107,241	-	107,241
(F)LPG제조설비 특별손익	-	-	-
(G)현저한차이 반영전 적정원가(A+B-C+D+E±F)	10,358,070	(389,495)	9,968,575
(H)영업외수익·비용 이연반영금액	-	-	-
(I)영업외수익·비용 이연반영후 적정원가(G+H)	10,358,070	(389,495)	9,968,575
(J)2016년 열량정산반영(*)	-	-	-
(K)적정원가(I+J)	10,358,070	(389,495)	9,968,575

(*) 2016년 추정 판매열량 대비 실제 판매열량 차이에 대한 정산반영 여부

(단위: GJ, %)

구 분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1. 정산대상열량			
1-㉠ 추정판매량	4,734,126	-	4,734,126
1-㉡ 실제판매량	5,130,764	-	5,130,764
1-㉢ 허용오차율($\pm 3\%$)	3.00%	-	3.00%
1-㉣ 판매량차이($(\text{㉡})-(\text{㉠})$)	396,638	-	396,638
1-㉤ 허용오차범위($(\text{㉡}) \times (\text{㉢})$)	153,923	-	153,923
1-㉥ 허용오차초과여부	초과		초과
2. 총 정산대상금액	(885,900)	-	(885,900)
3. 이연 대상금액	(885,900)	-	(885,900)
4. 전년 이월된 금액	-	-	-
5. 금년 정산반영액(2.-3.+4.)	-	-	-

가. 인건비

조정내역 :

인건비는 합리적인 인원증감을 반영하여 부문별 적정인원수를 산정하고, 급여 인상률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2017년 평균임금상승률 예측치인 3.50%를 적용하고 회사의 인건비 지급규정 등을 반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퇴직급여는 조정된 인건비를 근거로 퇴직금 지급 규정상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의 금년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정후금액 :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급여	1,252,315	(28,927)	1,223,388
상여금	992,606	(58,474)	934,132
제수당	29,389	(558)	28,831
잡급	1,649	-	1,649
퇴직급여	246,551	(9,535)	237,016
합 계	2,522,510	(97,494)	2,425,016

나. 감가상각비

조정내역 :

감가상각비는 가스사업과 비가스사업에 대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안분, 공급설비 기초가액과 금년 감가상각비의 재계산 및 투자계획 중 공급설비의 집행가능성이 낮은 금액을 차기 연도로 이월함에 따른 관련 자산의 감가상각비 조정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건물	34,134	(319)	33,816
공급설비	2,731,054	(12,427)	2,718,627
기타의 유형자산	116,858	(10,172)	106,686
무형자산	92,578	(6,069)	86,508
합 계	2,974,623	(28,987)	2,945,636

다. 기타영업비용

조정내역 :

기타 영업비용은 최근 5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1.29%를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이중 일부 항목은 회사의 경영계획을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발생비용만을 고려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상된 기타영업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후금액 :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복리후생비	483,596	(12,823)	470,773
여비교통비	10,462	(441)	10,021
통신비	95,256	(3,352)	91,904
수도광열비	15,617	(1,238)	14,379
세금과공과	394,824	-	394,824
임차료	54,929	-	54,929
지급수수료(*)	2,115,931	(187,182)	1,928,749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수선비	61,718	(8,486)	53,232
보험료	19,662	(1,230)	18,432
접대비	50,463	(1,814)	48,649
광고선전비	16,622	(4,094)	12,528
도서인쇄비	15,270	(217)	15,053
교육훈련비	12,470	833	13,303
사무용품비	1,680	(253)	1,427
소모품비	14,654	(707)	13,947
차량제경비	198,020	(6,697)	191,323
회의비	17,143	(2,780)	14,363
경비비	44,596	-	44,596
계량기교체비용	178,080	(13,272)	164,808
계	3,800,993	(243,753)	3,557,240

(*) 지급수수료에는 고객센터 지급수수료를 포함함.

라. 영업외수익,비용

조정내역 :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8조에 의하면, 요금기저 항목과의 일관성 등을 감안하여 이자비용, 유가증권 및 투자자산 관련 손실 등은 적정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기타 도시가스공급과 관련된 영업외비용은 적정원가에 산입합니다. 또한, 제9조에 의하면, 요금기저 항목과의 일관성 등을 감안하여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유가증권 및 투자자산관련 이익 등은 적정원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기타 도시가스공급과 관련된 영업외수익은 적정원가에 산입합니다. 영업외수익, 비용의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후금액 :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영업외비용	101,031	-	101,031
영업외수익	97,970	-	97,970

마. 사회적 배려대상자 감면 등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2조 6항에 의한 사회적 배려대상자 요금 감면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가구, 천원)

구 분	예상 가구수	금 액	비 고
기초수급자 등	2,304	84,026	
차상위	435	8,080	
다자녀	1,520	15,135	
합 계	4,259	107,241	

바. 법인세비용

조정내역 :

법인세비용은 회사제시 요금기저 및 투자보수율에 당 회계법인의 조정사항을 반영한 투자보수를 재계산 한 후 산정하였습니다.

조정후금액 :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세후투자보수 ①	3,366,912	(68,290)	3,298,622
법인세율 ②	22.00%	-	22.00%
세전투자보수 ③=①/(1-②)	4,316,554	(87,551)	4,229,002
법인세비용 ③-①	949,642	(19,261)	930,381

2) 요금기저

금년도 요금기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운전자금	1,053,917	(56,875)	997,043
유형자산	44,755,577	(1,017,181)	43,738,395
무형자산	46,320	141,697	188,017
임차보증금	112,000	-	112,000
합 계	45,967,814	(932,358)	45,035,455

가. 운전자금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운전자금은 금년추정 영업비용(원료비제외)에서 감가상각비, 퇴직급여, 대손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등을 차감한 금액의 2개월분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나. 유형자산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유형자산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A)전기말 미상각잔액	41,279,019	-	41,279,019
당기증가 계획치	2,993,424	(669,393)	2,324,031
당기감소 계획치	-	-	-
당기 감가상각비	2,882,046	(22,917)	2,859,128
(B)당기말 미상각잔액	41,390,398	(646,476)	40,743,922
(C)평균 미상각잔액[(A+B)÷2]	41,334,708	(323,237)	41,011,471
(D)토지재 평가차익	-	-	-
(E)건설중인자산상당액	3,420,868	(693,943)	2,726,925
(F)비가스사업용자산	-	-	-
유형자산계[C-D+E-F]	44,755,576	(1,017,180)	43,738,396

다. 무형자산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무형자산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A)전기말 미상각잔액	194,152	981,569	1,175,721
당기증가 계획치	727,463	(292,504)	434,959
당기감소 계획치	-	-	-
당기상각비	557,696	(36,563)	521,133
(B)당기말 미상각잔액	363,919	725,628	1,089,547
(C)평균 미상각잔액 $[(A+B) \div 2]$	279,036	853,598	1,132,634
(D)비가스 사업용자산	232,716	711,901	944,617
무형자산계(C-D)	46,320	141,697	188,017

라. 임차보증금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임차보증금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A)전기말 잔액	295,000	-	295,000
당기증가 계획치	-	-	-
당기감소 계획치	-	-	-
(B)당기말 잔액	295,000	-	295,000
(C)평균 잔액 $[(A+B) \div 2]$	295,000	-	295,000
(D)비가스 사업용자산	183,000	-	183,000
임차보증금계(C-D)	112,000	-	112,000

3) 투자보수율

금년도의 적정투자보수율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가중평균하여 산정하였으며, 자기자본에 대한 세후 보수율은 예금금리등으로 적정하게 산정한 기회비용 및 도시가스사업자로서 직전년도 도시가스보급률이 전국 평균보급률 80.70%에 미달함에 따라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설비 투자 증대를 유도하고 보급률을 증대시키기 위해 3%의 가산율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항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자기자본	102,698,703	-	102,698,703
타인자본	-	-	-
자기자본수익률	4.32%	-	4.32%
타인자본수익률	0.00%	-	0.00%
가중평균투자보수율	4.32%	-	4.32%
투자보수율가산	3.00%	-	3.00%
적정투자보수율	7.32%	-	7.32%

4) 투자자원

투자재원은 도시가스사업의 여건 등을 감안, 배관설비의 증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급설비 이용효율 제고로 인한 원가 인하요인 발생시 그 범위 안에서 필요에 따라 총괄원가 외에 시·도시자가 별도의 투자재원을 가산할 수 있습니다.

해양도시가스사의 경우 장기 공급계획에 따른 배관 투자계획과 경제성 미달 지역에 대한 보급률 증대를 감안하고 공급비용의 급격한 변동 및 인접 지역과의 과도한 공급비용 차이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회사의 배관 투자계획을 감안하여 금번 공급비용 산정 시 265,000천원의 투자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전년까지 회사의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시 반영된 투자재원은 없습니다.

투자재원으로 취득한 공급설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배관투자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나 수요가에서 경제성 확보를 위해 배관공사비를 일부 부담(시설분담금)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해당 공급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적정원가에 산입하지 않고 투자보수가 산정되는 요금기저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투자재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미사용할 경우 환수대상에 해당합니다.

상기 투자재원은 현재 해당 재원을 별도 계좌에 예치 관리하여 타 용도로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전남 8개 지역을 통한 적재적소의 투자를 유도하여 도시가스 보급과 관련한 장기 민원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5) 공급열량의 산출

회사의 최근 3개년 공급열량 실적과 2017년 추정열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GJ)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공급열량	4,130,427	4,488,117	5,130,764	5,388,062
증가열량	349,449	358,278	642,647	257,298
증 가 율	9.24%	8.67%	14.32%	5.01%

(*) 당기 추정열량은 보급지역 확대에 의한 주택용 증가에 기인합니다.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5조 2 (판매량 차이의 정산)에 의하여 일정차이(±3%) 발생 시에 판매열량정산이 이루어짐에 따라, 금년 4월까지의 실적에 5월부터 금년말까지의 계획 열량을 가산하여 산정한 회사의 제시열량을 인정하였으며,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실적열량

(단위: GJ)

월	1	2	3	4	실적열량계
열량	598,372	586,411	574,139	490,350	2,249,272

나. 공급계획열량

(단위: GJ)

월	5	6	7	8	9
열량	387,646	369,694	356,064	347,656	332,349
월	10	11	12	추정열량계	
열량	361,581	457,405	526,395	3,138,790	

다. 금년도 추정공급열량

$$2,249,272\text{GJ} + 3,138,790\text{GJ} = 5,388,062\text{GJ}$$

IV. 용도별 공급비용

용도별 소비자 가격의 조정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포도시가스

(단위: GJ, 원/MJ)

구 분	열 량 (GJ)	현행 공급비용	대안 1		대안 2		대안 3		대안 4	
			공급비용	조정율	공급비용	조정율	공급비용	조정율	공급비 용	조정율
취사용	528,072	3.0342	3.0526	0.61%	3.0571	0.76%	3.1342	3.30%	3.0342	0.00%
개별난방용	2,150,235	3.0342	3.0526	0.61%	3.0571	0.76%	3.1342	3.30%	3.0342	0.00%
영업용1	430,425	3.3664	3.3848	0.55%	3.3918	0.76%	3.2259	-4.17%	3.4420	2.24%
영업용2	99,478	3.3017	3.3201	0.56%	3.3266	0.76%	3.1639	-4.17%	3.3758	2.24%
업무난방용	92,315	2.8701	2.8885	0.64%	2.8918	0.76%	2.7503	-4.17%	2.9345	2.24%
냉난방공조용	166,667	1.5943	1.6127	1.15%	1.6063	0.76%	1.5278	-4.17%	1.6301	2.24%
산업용1	1,321,038	1.4133	1.4317	1.30%	1.4240	0.76%	1.3543	-4.17%	1.4450	2.24%
산업용2	46,906	0.4560	0.4744	4.03%	0.4594	0.76%	0.4370	-4.17%	0.4662	2.24%
수송용	294,339	0.4906	0.5090	3.74%	0.4943	0.76%	0.4956	1.02%	0.4906	0.00%
합계	5,129,475	2.5424	2.6551	4.43%	2.6551	4.43%	2.6551	4.43%	2.6551	4.43%

* 산업용2 요금은 월43.05 TJ 초과 사용시 적용됩니다.

소비자 가격 조정안은 다음과 같이 4가지 대안을 산출하였고, 대안 4을 합리적인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대안1: 금년공급비용 2.6551원을 각 용도별 공급비용에 동일한 인상단가(0.0184원)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대안2: 금년공급비용 2.6551원을 각 용도별 공급비용에 동일한 비율(0.76%)로 인상한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대안3: 주택용을 전국 지방평균보다 0.02원 낮게 0.1원 인상하여 3.1342원(3.30%)으로 하고, 수송용은 0.005원 인상하며, 기타 용도별 공급비용을 동일한 비율(4.17%)로 인정한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대안4: 주택용, 수송용은 동결하고, 기타 용도별 공급비용에 동일한 비율(2.24%)로 인상한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2. 대화도시가스

(단위: GJ, 원/MJ)

구 분	열 량 (GJ)	현행 공급비용	대안 1		대안 2		대안 3		대안 4	
			공급 비용	조정율	공급 비용	조정율	공급 비용	조정율	공급 비용	조정율
취사용	3,745	2.0121	1.8368	-8.71%	1.7897	-11.05%	2.0121	0.00%	2.0121	0.00%
개별난방용	1,750,930	2.0121	1.8368	-8.71%	1.7897	-11.05%	2.0121	0.00%	2.0121	0.00%
중앙난방용	91,180	2.0121	1.8368	-8.71%	1.7897	-11.05%	2.0121	0.00%	2.0121	0.00%
영업용1	174,439	1.9598	1.7845	-8.95%	1.7432	-11.05%	1.5811	-19.32%	1.5818	-19.29%
영업용2	189,377	1.9635	1.7882	-8.93%	1.7465	-11.05%	1.5841	-19.32%	1.5848	-19.29%
업무난방용	148,651	1.9635	1.7882	-8.93%	1.7465	-11.05%	1.5841	-19.32%	1.5848	-19.29%
냉난방공조용	88,683	1.3375	1.1622	-13.11%	1.1897	-11.05%	1.0790	-19.32%	1.0795	-19.29%
산업용1	2,802,211	1.4069	1.2316	-12.46%	1.2514	-11.05%	1.1350	-19.32%	1.1355	-19.29%
열병합용	103,320	1.4005	1.2252	-12.52%	1.2457	-11.05%	1.1299	-19.32%	1.1304	-19.29%
열전용설비	23,548	1.4005	1.2252	-12.52%	1.2457	-11.05%	1.1299	-19.32%	1.1304	-19.29%
수송용	392,616	0.4906	0.3153	-35.74%	0.4364	-11.05%	0.4956	1.02%	0.4906	0.00%
합계	5,768,700	1.7064	1.5348	-10.06%	1.5348	-10.06%	1.5348	-10.06%	1.5348	-10.06%

소비자 가격 조정안은 다음과 같이 4가지 대안을 산출하였고, 대안 4을 합리적인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대안1: 금년공급비용 1.5348원을 각 용도별 공급비용에 동일한 인하단가(0.1753원)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대안2: 금년공급비용 1.5348원을 각 용도별 공급비용에 동일한 비율(11.05%)로 인하한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대안3: 주택용을 동결하고 수송용은 0.005원 인상하며, 기타 용도별 공급비용을 동일한 비율(19.32%)로 인하한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대안4: 주택용, 수송용은 동결하고, 기타 용도별 공급비용에 동일한 비율(19.29%)로 인하한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3. 전남도시가스

(단위: GJ, 원/MJ)

구 분	열 량 (GJ)	현행 공급비용	대안 1		대안 2		대안 3		대안 4	
			공급 비용	조정을	공급 비용	조정을	공급 비용	조정을	공급 비용	조정을
취사용	11,443	3.0342	3.1084	2.44%	3.1386	3.44%	3.1342	3.30%	3.0342	0.00%
개별난방용	3,082,153	3.0342	3.1084	2.44%	3.1386	3.44%	3.1342	3.30%	3.0342	0.00%
영업용1	425,781	3.4177	3.4919	2.17%	3.5353	3.44%	3.5406	3.59%	3.6307	6.23%
영업용2	86,388	3.2939	3.3681	2.25%	3.4072	3.44%	3.4123	3.59%	3.4991	6.23%
업무난방용	129,152	3.4323	3.5065	2.16%	3.5504	3.44%	3.5557	3.59%	3.6462	6.23%
냉난방공조용	149,621	1.8633	1.9375	3.98%	1.9274	3.44%	1.9303	3.59%	1.9794	6.23%
산업용1	1,353,643	2.0056	2.0798	3.70%	2.0746	3.44%	2.0777	3.59%	2.1306	6.23%
산업용2	722,389	1.7868	1.8610	4.15%	1.8483	3.44%	1.8510	3.59%	1.8981	6.23%
산업용3	1,962,344	1.5824	1.6566	4.69%	1.6368	3.44%	1.6393	3.59%	1.6810	6.23%
산업용4	1,644,036	1.3491	1.4233	5.50%	1.3955	3.44%	1.3976	3.59%	1.4332	6.23%
연료전지	42,870	0.7838	0.8580	9.46%	0.8108	3.44%	0.7838	0.00%	0.7838	0.00%
수송용	294,610	0.4906	0.5648	15.12%	0.5075	3.44%	0.4956	1.02%	0.4906	0.00%
합계	9,904,430	2.3189	2.3638	1.94%	2.3638	1.94%	2.3638	1.94%	2.3638	1.94%

* 산업용2 요금은 월43.05 TJ 초과시, 산업용3 요금은 129.15초과시, 산업용4 요금은 301.35초과시 적용됩니다.

소비자 가격 조정안은 다음과 같이 4가지 대안을 산출하였습니다.

** 산업용4는 공급권역내 동일법인일 경우, 통합열량으로 해당 부제 요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안1: 금년공급비용 2.3638원을 각 용도별 공급비용에 동일한 인상단가(0.0742원)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대안2: 금년공급비용 2.3638원을 각 용도별 공급비용에 동일한 비율(3.44%)로 인상한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대안3: 주택용을 전국 지방평균보다 0.02원 낮게 0.1원 인상하여 3.1342원(3.30%)으로 하고, 수송용은 0.005원 인상, 연료전지는 동결하며, 기타 용도별 공급비용을 동일한 비율(3.59%)로 인상한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대안4: 주택용, 수송용 및 연료전지는 동결하고, 기타 용도별 공급비용에 동일한 비율(6.23%)로 인상한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4. 해양도시가스

(단위: GJ, 원/MJ)

구 분	열 량 (GJ)	현행 공급비용	대안 1		대안 2		대안 3		대안 4	
			공급 비용	조정율	공급 비용	조정율	공급 비용	조정율	공급 비용	조정율
개별난방용	1,268,403	3.0342	3.0228	-0.38%	3.0198	-0.48%	3.1342	3.30%	3.0342	0.00%
영업용1	243,574	4.3227	4.3113	-0.26%	4.3022	-0.48%	4.2316	-2.11%	4.2931	-0.68%
영업용2	31,033	3.3241	3.3127	-0.34%	3.3083	-0.48%	3.2541	-2.11%	3.3013	-0.68%
업무난방용	184,379	3.7772	3.7658	-0.30%	3.7593	-0.48%	3.6976	-2.11%	3.7513	-0.68%
냉난방공조용	28,701	1.7638	1.7524	-0.65%	1.7554	-0.48%	1.7266	-2.11%	1.7517	-0.68%
산업용1	2,103,309	2.1951	2.1837	-0.52%	2.1847	-0.48%	2.1489	-2.11%	2.1801	-0.68%
산업용2	900,125	1.5365	1.5251	-0.75%	1.5292	-0.48%	1.5041	-2.11%	1.5260	-0.68%
열병합용	689	1.8897	1.8783	-0.61%	1.8807	-0.48%	1.8499	-2.11%	1.8768	-0.68%
열전용설비	373,313	2.9614	2.9500	-0.39%	2.9473	-0.48%	2.8990	-2.11%	2.9411	-0.68%
수송용	254,536	0.4906	0.4792	0.00%	0.4883	-0.48%	0.4956	1.02%	0.4906	0.00%
합계	5,388,062	2.5117	2.5001	-0.46%	2.5001	-0.46%	2.5001	-0.46%	2.5001	-0.46%

* 산업용2 요금은 월43.05 TJ 초과시 적용됩니다.

소비자 가격 조정안은 다음과 같이 4가지 대안을 산출하였습니다.

대안1: 금년공급비용 2.5001원을 2017년 각 용도별 공급비용에 동일한 인하단가(0.0114원)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대안2: 금년공급비용 2.5001원을 각 용도별 공급비용에 동일한 비율(0.48%)로 인하한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대안3: 주택용을 전국 지방평균보다 0.02원 낮게 0.1원 인상하여 3.1342원(3.30%)으로 하고, 수송용은 0.005원 인상하며, 기타 용도별 공급비용을 동일한 비율(2.11%)로 인하한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대안4: 주택용과 수송용을 동결하였으며 나머지 용도별 단가는 동일한 비율(0.68%)로 인하한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V. 과업지시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

전라남도에서 제시한 중점검토 내용과 이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용 기본요금의 적정성 분석 및 대안 제시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14조 3항 1호에 따라 산정된 주택용 기본요금 산정내역과 현행기본요금과의 비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목포도시가스	대화도시가스	전남도시가스	해양도시가스
공급관감가상각비	849,535	520,986	668,555	626,992
검침비	330,218	200,259	395,822	285,288
송달비	171,618	112,120	51,739	82,854
고지서발행비	40,276	36,158	25,084	8,372
지로수수료	107,051	80,162	6,593	58,826
안전점검비	314,829	309,325	397,051	488,389
계량기교체비	186,496	232,312	775,684	280,031
합계	2,000,023	1,491,322	2,320,527	1,830,752
수용가수(세대)	117,623	79,588	143,068	67,488
기본요금 산정액(원)	1,417	1,562	1,352	2,261
현재 기본요금(원)	770	770	770	770
현재요금 대비 수준	184%	203%	176%	294%

(자료 : 회사제시 및 정안회계법인 분석)

현재 적용되는 기본요금 대비 산정된 요금 수준은 각 사별로 최저 176% ~ 최고 294%로 4개사 모두 현재 기본요금을 인상할 유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 전국 주택용 기본요금 및 평균공급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지 역	공급회사	기본요금	평균공급비용	총공급물량(GJ)
서울특별시	서울 5 사	1,000	1.1435	104,344,426
경기도	삼천리 외	850	1.4933	94,721,643

지 역	공급회사	기본요금	평균공급비용	총공급물량(GJ)
인천광역시	인천 외	840	1.5465	25,020,754
부산시	부산	858	2.2311	26,006,564
대구시	대성	775	2.3731	20,654,980
광주시	해양	750	2.2856	13,708,979
대전시	충남	850	3.0157	14,569,453
울산시	경동	778	1.9291	11,962,619
세종시	충부	760	2.1793	857,500
강원 춘천시	강원	950	3.2774	3,442,032
강원 원주시	참빛원주	950	2.7544	3,089,713
강원 영동지역	참빛영동	950	4.7880	1,114,466
강원 평창시	명성	950	3.3106	-
충북 청주시	충청ES	950	2.6184	8,021,880
충북 충주시	참빛충북	950	2.8177	1,615,925
충남 천안시	충부	820	2.7303	10,491,142
충남 서산시	서해	820	2.7413	3,264,991
전북 전주시	전북	750	2.1077	8,517,992
전북 군산시	군산	750	2.4633	2,597,406
전북 익산시	전북ES	750	3.2709	2,517,150
전남 목포시	목포	770	3.0342	2,578,516
전남 순천시	전남	770	3.0342	3,228,768
전남 여수시	대화	770	2.0121	1,869,118
전남 나주시	해양	770	3.0342	1,157,489
경북 구미시	영남ES	750	2.4891	6,274,864
경북 포항시	영남ES	750	2.4753	4,679,027
경북 경주시	서라벌	750	2.523	2,386,585
경북 안동시	대성청정E	750	3.2709	1,635,338
경남 창원시	경남	850	2.7516	13,804,517
경남 진주시	지에스이	1,100	3.0934	3,174,928
경남 양산시	경동	850	2.7516	1,971,899
평 균		836	2.6305	12,880,021

(자료: 한국도시가스협회 등)

상기 자료에 따르면 전라남도 지역의 기본요금은 전국에서도 낮은 수준이며 전국 기본요금의 단순평균인 836원보다 66원이 낮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을 검토해 보면, 수도권과 광역시들의 경우 인구수와 인구집적도가 높아 보급률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경제적인 규모의 경제를 이룬 것으로 볼 수 있어 기본요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인상 필요성이 없지만, 인구집적도나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지방의 경우 보급률 증대를 위해서는 보급 확대를 위한 경제성 확보의 노력과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전국 보급률 평균을 기준으로 아래에 있는 충청북도와 강원도의 경우 기본요금이 전국 기본요금 평균 836원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적으로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경제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으며, 산악지형 등의 불리한 여건으로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하는 강원도와 유사한 보급률을 나타내는 전라남도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단위: 원, 세대)

지 역	기본요금	보급률(%)	수요가수	전체 세대수	비 고
서울특별시	1,000	97.99%	4,105,817	4,189,839	
인천광역시	840	91.13%	1,067,457	1,171,399	
경기도	850	86.94%	4,350,198	5,003,406	
수도권 소계		91.88%	9,523,472	10,364,644	
부산광역시	858	87.58%	1,271,083	1,451,270	
대구광역시	775	94.75%	942,041	994,220	
광주광역시	750	97.65%	572,660	586,464	
대전광역시	850	94.05%	570,063	606,137	
울산광역시	778	91.80%	418,012	455,352	
세종특별자치시	760	79.33%	74,845	94,343	
강원도	950	43.58%	301,686	692,254	
충청북도	950	62.93%	428,535	680,960	
충청남도	820	61.27%	552,855	902,294	
전라북도	750	65.96%	521,148	790,084	
전라남도	770	45.40%	382,321	842,688	

지 역	기본요금	보급률(%)	수요가수	전체 세대수	비 고
경상북도	750	60.28%	711,731	1,180,643	
경상남도	850	64.28%	890,776	1,385,684	
제주특별자치도	-	8.79%	23,455	266,972	
지방 소계		70.10%	7,661,211	10,929,365	
전국 합계		80.70%	17,184,683	21,294,009	

(자료: 한국도시가스협회 등)

상기 자료에서 전체 세대수는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주민등록 인구통계상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수요가수는 도시가스사업통계월보상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제주도의 경우 내륙과 달리 LPG+Air 방식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도시가스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라남도 전체의 주택용 수요가수는 총 382,321 세대로 기본요금 1원의 증가는 총 공급비용의 회수에 있어 연간 4,588천원 (=382,321 세대 x 1원 x 12개월)의 증가에 불과하며, 전라남도 주택용 수요가 중 월 사용량이 없어 기본요금만을 부담하는 세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 바 주택용 기본요금 변동에 따른 수요가의 요금부담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의 검토결과, 전국 최하위 보급률 수준인 전라남도의 현실을 고려할 때 현재 770원인 기본요금의 인상 필요성은 충분히 확인가능하며, 기본요금 인상을 통해 도시가스사의 발생비용을 일부 보전하여 사용량 요금의 인상폭을 낮추는 한편 전국 최저 수준의 보급률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독려하는 효과 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전남지역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통한 지역민의 에너지 사용 편리성과 편익을 증진시키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2. 신규 공급지역(보성군, 고흥군) 용도별 공급비용 산정 대안제시

2017년 신규 공급권역은 목포도시가스의 경우 강진군(지속투자), 전남도시가스의 경우 보성군, 고흥군 그리고 해양도시가스 및 대화도시가스의 경우 올해 예정된 신규 공급권역은 없습니다.

신규 공급지역에 대한 별도 요금산정을 위해서는 우선 해당 투자비와 발생원가가 구분 가능하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며 증분(marginal) 개념에 따라 기존 공급권역 외에 신규 공급권역 공급이 추가됨에 따라 증가하는 원가를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신규 공급지역의 경우 배관 투자비는 쉽게 구분이 가능하지만, 발생원가는 신규 공급 초기에는 기존 인력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후 충분한 수요 증가가 있을 때 인력 충원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존 인력과 자원에 대한 합리적 배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공동으로 이용되는 공통 배관이나 공급시설 역시 합리적 배부기준이 필요합니다.

한편, 신규 권역 추가 시 마다 기본적인 인력과 자원은 소요되는데 반해 초기 판매량은 적을 수 밖에 없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요금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결정될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현상은 동일 사업자가 인접한 지역에 대해 차등 요금을 적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소비자들의 추가적 민원만 야기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참고로 투자비 및 제반 부대비용을 고려할 때 보성군만을 별도의 공급비용 산정 시 24.9원/MJ로 현 전남도시가스 요금대비 822%가 높으며, 고흥군만을 별도의 공급비용 산정 시 19.4원/MJ로 현 전남도시가스 요금대비 638%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3. 공급비용 단일화 계획 관련 단일요금 적용 시 적정요금과 조정효과 등 분석

2017년 용도별 요금으로 대안4를 적용할 경우 주택용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MJ)

구 분	목 포		대 화		전 남		해 양	
	2016	2017	2016	2017	2016	2017	2016	2017
취사난방용	3.0342	3.0342	2.0121	2.0121	3.0342	3.0342	3.0342	3.0342

(자료 : 정안회계법인 용도별 단가 대안 4)

전라남도는 2010년부터 대화도시가스를 제외한 3개사의 주택용 요금을 일치시켜 왔으며 2017년에도 대화도시가스 및 해양도시가스를 제외한 2개사의 경우 공급비용 상승의 영향이 있지만 주택용 요금은 동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2017년 대화도시가스의 주택용 요금을 나머지 3개사의 요금과 일치시킬 경우 대화도시가스의 예상 용도별 공급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대안4의 경우)

(단위: GJ, 원/MJ)

구 분	열 량 (GJ)	2016년 공급비용	2017년 공급비용	증감액	증감율
취사용	3,745	2.0121	3.0342	1.0221	50.80%
개별난방용	1,750,930	2.0121	3.0342	1.0221	50.80%
중앙난방용	91,180	2.0121	3.0342	1.0221	50.80%
영업용 1	174,439	1.9598	0.9151	-1.0447	-53.30%
영업용 2	189,377	1.9635	0.9169	-1.0466	-53.30%
업무난방용	148,651	1.9635	0.9169	-1.0466	-53.30%
냉 난방공조용	88,683	1.3375	0.6246	-0.7129	-53.30%

구 분	열 량 (GJ)	2016년 공급비용	2017년 공급비용	증감액	증감율
산업용 1	2,802,211	1.4069	0.6570	-0.7499	-53.30%
열병합용	103,320	1.4005	0.6540	-0.7465	-53.30%
열전용설비	23,548	1.4005	0.6540	-0.7465	-53.30%
수송용	392,616	0.4906	0.2291	-0.2615	-53.30%
합계	5,768,700				

(자료 : 정안회계법인 분석)

상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년 대화도시가스의 주택용 요금을 타 도시가스사에 적용되는 요금인 3.0342원으로 일치시킬 경우 2016년 주택용 요금인 2.0121원에서 1.0221원 증가하여 50.80%가 인상되는 반면, 오히려 다른 용도별 요금은 2016년 대비 53.30%가 인하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남지역 주택용의 단일요금 적용은 타 지역의 평균 공급비용 인하 시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단기간 내에 인위적으로 요금을 일치시키는 것은 상당한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2016년 전국 용도별 공급비용 편차(최고~최저) 범위 및 지역별 특성 분석

지역	주택용			업무 난방	일반		냉난방 공조용	산업용	열병합	열병합	열전용 설비용
	취사용	개별	중앙		영업1	영업2			1	2	
서울	1.1435	1.1435	1.1435	1.4090	2.4107	1.4090	1.4090	0.7084	0.6075	0.6075	1.1435
경기	1.5268	1.4933	1.4933	1.7339	2.7458	1.7339	1.7339	1.0723	1.0723	1.0723	1.2416
인천	1.5094	1.5465	1.5465	1.7864	2.9581	1.7864	1.7864	0.8732	1.1045	1.2563	1.5465
부산	2.2311	2.2311	2.2311	2.9175	2.9590	1.9903	2.9175	1.1515	1.7758	0.8887	0.8887
대구	2.3731	2.3731	2.2641	3.0410	3.0983	3.0410	3.0410	1.1317	2.2641	2.2641	2.3731
광주	1.0794	2.2856	2.2856	2.2208	2.7984	1.9069	2.2208	0.9582	0.6653	0.6653	2.2856
대전	1.3829	3.0157	2.8343	3.4053	3.8333	3.3401	3.4053	1.0624	1.8862	1.6314	3.0157
울산	1.9291	1.9291	1.8558	2.0560	2.0767	1.4722	2.0560	0.4661	1.2972	X	X
세종	2.3223	2.1793	1.8976	2.3727	2.7647	2.3727	2.3727	1.3255	X	X	X
춘천	3.2774	3.2774	3.5696	3.7169	3.6107	3.6848	3.7169	2.4199	3.5696	3.5696	X
원주	2.7544	2.7544	2.9757	3.3351	2.9921	2.9796	3.3351	2.1565	2.9757	2.9757	X

지역	주택용			업무 난방	일반		냉난방 공조용	산업용	열병합	열병합	열전용 설비용
	취사용	개별	중앙		영업1	영업2			1	2	
영동	4.7880	4.7880	4.6313	4.5964	4.7544	4.2180	4.7544	4.2134	X	X	X
평창	3.3106	3.3106	X	X	3.6423	X	X	X	X	X	X
청주	2.6184	2.6184	2.2363	3.0081	2.5521	2.5521	1.9605	1.8890	2.2363	1.2320	X
충주	2.8177	2.8177	2.7015	2.5601	3.1182	3.1182	1.6924	1.7208	2.7079	X	X
천안	1.0934	2.7303	2.4078	3.0102	3.5075	3.0102	3.0102	1.6817	2.0885	0.7889	X
서산	1.4991	2.7413	2.3283	3.0620	3.2924	3.2924	3.0620	1.1701	1.8926	0.6546	X
전주	2.1077	2.1077	1.8421	2.3094	2.3094	2.3094	2.3094	1.2940	1.8433	1.0414	X
군산	2.4633	2.4633	2.4633	3.0736	3.0736	3.0736	3.0736	1.2180	2.6197	1.4635	X
익산	3.2709	3.2709	3.2709	3.7471	3.7471	3.7471	3.7471	1.2952	3.4005	1.0414	X
목포	3.0342	3.0342	3.0342	2.8701	3.3664	3.3017	2.8701	0.9347	2.8897	2.8897	X
순천	3.0342	3.0342	3.0342	3.4323	3.4177	3.2939	3.4323	1.7916	X	X	X
여수	2.0121	2.0121	2.0121	1.9635	1.9598	1.9635	1.9635	1.2877	1.4005	1.4005	X
나주	3.0342	3.0342	3.0342	3.7772	4.3227	3.3241	3.7772	1.8658	1.8897	1.8897	X
구미	2.5427	2.4891	2.4891	2.7427	2.7296	2.7296	2.7427	1.5056	2.6424	2.5488	2.4891
포항	2.6324	2.4753	2.4753	2.9520	2.9679	2.9679	2.9520	1.6921	2.7269	X	X
경주	2.5832	2.5230	2.5230	2.8552	2.8356	2.8356	2.8552	1.4628	X	X	X
안동	3.2709	3.2709	3.2709	3.5518	2.9078	2.9078	3.5518	2.2066	2.5967	X	X
창원	2.7516	2.7516	2.6315	2.9954	2.9613	2.4846	2.9954	1.5298	2.1906	X	X
진주	3.0934	3.0934	3.0934	3.8605	4.2005	3.5493	3.8605	2.6649	2.9426	1.1233	X
양산	2.7516	2.7516	2.7516	2.9954	2.9613	2.4846	2.9954	1.2722	X	X	X
평균	2.4593	2.6305	2.5443	2.9119	3.1250	2.7627	2.8533	1.5341	2.1314	1.5502	1.8730
표준편차	3.7086	3.6445	3.4878	3.1874	2.7946	2.8090	3.3454	3.7473	2.9621	2.9621	2.1270

(자료: 한국도시가스협회)

상기의 자료를 검토하면 도시가스 보급률이 높은 서울, 경기도 및 광역시의 경우 전체적인 용도별 단가가 낮으며, 강원, 전남 등 지역은 보급률이 낮기 때문에 용도별 단가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지역은 주택용 용도별 단가가 낮은 반면, 울산 등 공업지역은 산업용 단가가 낮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5. 도내 공급여건 최적화를 위한 용도별 적정 공급비용과 평균 공급비용 산정 (대안4)

도내 공급여건 최적화를 위한 용도별 적정 공급비용 최소 편차(최고~최저) 범위 및 용도 회사별 평균 공급비용 산정내역은 용도별 요금 대안4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공급비용					회사별		
	목포	대화	전남	해양	평균	MAX	MIN	최대편차
취사용	3.0342	2.0121	3.0342	3.0342	2.7787	3.0342	2.0121	1.0221
영업용 1	3.2923	1.5818	3.6307	4.2931	3.1995	4.2931	1.5818	2.7113
영업용 2	3.2290	1.5848	3.4991	3.3013	2.9036	3.4991	1.5848	1.9143
업무난방용	2.8069	1.5848	3.6462	3.7513	2.9473	3.7513	1.5848	2.1665
냉난방공조용	1.5592	1.0795	1.9794	1.7517	1.5925	1.9794	1.0795	0.8999
산업용 1	1.3822	1.1355	2.1306	2.1801	1.7071	2.1801	1.1355	1.0445
산업용 2	0.4460	-	1.8981	1.5260	1.2900	1.8981	0.4460	1.4522
산업용 3	-	-	1.6810	-	1.6810	1.6810	1.6810	-
산업용 4	-	-	1.4332	-	1.4332	1.4332	1.4332	-
열병합	-	1.1304	-	1.8768	1.5036	1.8768	1.1304	0.7464
열전용설비	-	1.1304	-	2.9411	2.0358	2.9411	1.1304	1.8107
연료전지	-	-	0.7838	-	0.7838	0.7838	0.7838	-
수송용	0.4906	0.4906	0.4906	0.4906	0.4906	0.4906	0.4906	-
평균	2.0300	1.3033	2.2006	2.5146	2.0122	2.5146	1.3033	1.2113
MAX	3.2923	2.0121	3.6462	4.2931	3.1995			
MIN	0.4460	0.4906	0.4906	0.4906	0.4906			
최대편차	2.8463	1.5215	3.1556	3.8025	2.7089			

(자료 : 정안회계법인 분석)

가. 목포도시가스

회사의 2017년도 예정공급열량은 5,129 TJ 로 전년 승인공급열량 대비 23 TJ 만큼 감소 (0.45%)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강진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소외지역에 대한 투자 확대에 의한 투자비 증가가 반영되어 요금기저에 대한

투자보수율 감소 영향에도 불구하고 단위당 평균공급비용은 전년과 비교하여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용도별로는 주택용 및 수송용의 경우 동결하였으며, 기타 용도의 경우 약 2% 정도의 인하 요인을 반영하였습니다.

나. 대화도시가스

회사의 2017년 예정공급열량은 전년 승인공급열량 대비 258 TJ 만큼 감소(4.29%)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전년도 실제공급열량이 승인공급열량에 미달하여 열량정산 금액이 발생하여 공급비용에 가산 반영되었으며, 요금기저에 대한 투자보수율 하락으로 인한 영향으로 단위당 평균공급비용은 전년과 비교하여 인하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경제성 부족 등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지역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투자재원 900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회사의 용도별 요금은 인하요인이 크나 주택용의 경우 타 도시가스사와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동결하였으며, 수송용의 경우 4개 도시가스사의 동일가격 정책의 유지를 위해 동결하였습니다. 기타 용도의 경우 단가를 인하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 전남도시가스

회사의 2017년 예정공급열량은 전년 승인공급열량 대비 678 TJ 만큼 증가(7.35%)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신규공급권역 확대에 의한 투자비 증가가 반영되어 요금기저에 대한 투자보수율 감소 영향에도 불구하고 단위당 평균공급비용은 전년과 비교하여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용도별 단가도 전체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한편, 회사의 경우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따라 당기 보성, 고흥군을 신규 공급지역으로 추가하여 공급비용이 산정되었고 기존 공급지역과 동일 요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라. 해양도시가스

회사의 2017년 예정공급열량은 전년 승인공급열량 대비 654 TJ 만큼 증가(13.81%)할 것으로 예상되고, 전년도 실제공급열량이 승인공급열량을 초과하여 열량정산 금액 885백만원이 발생하였으나 2018년도 열량의 감소가 예상되어 용도별 단가의 인상효과를 억제시키기 위

해 전액 이연하였습니다. 인건비 상승 및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예정공급열량이 증가하여 단위당 평균공급비용은 전년대비 인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경제성 부족 등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지역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투자재원 265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용도별 요금은 주택용 및 수송용의 경우 동결하였으며, 기타용도의 경우 0.68%를 인하요인을 반영하였습니다.

6. 신규 용도(연료전지) 및 산업용 요금 부제 확대 적정성 검토 및 방안 제시

전남도시가스의 경우 2017년도부터 신규 용도인 연료전지를 공급할 계획이며, 연료전지의 단가는 하기의 전국 연료전지 단가의 평균치로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원)

지역	공급회사	용도별단가
서울특별시	(서울5사)	0.6075
경기도	(삼천리외)	0.6720
인천광역시	(인천 외)	0.6027
부산광역시	(부산)	0.7331
대구광역시	(대성)	1.1317
광주광역시	(해양)	0.6653
강원 춘천시	(강원)	1.5173
강원 원주시	(참빛원주)	0.7341
충남 천안시	(충부)	0.6235
충남 서산시	(서해)	0.6358
경북 구미시	(영남ES)	0.6990
평 균		0.7838

(자료: 한국도시가스협회)

또한, 전남도시가스의 경우 산업체의 이탈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산업용 4의 용도별 요금의 신설을 요청한 바, 공급권역 내 동일법인일 경우 열량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 여수지역 배관 투자자원 관련 검토

가. 여수시 산업용 열량 정산분에 대한 세대당 및 배관 1m당 소요된 표본 공사비 산출

산업용 열량 정산분과 관련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투자자원과 실제 투자된 내역에 대한 세대당 및 배관 1m당 소요된 표본 공사비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투자년도는 투자가 완료된 연도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1) 2009년

(단위: 천원)

구 간	투자자원	공사금액	배관길이 (m)	m 당 평균	세대수	세대당 평균
학동11통	133,383	144,148	742	194	131	1,100
신기9,10통	426,617	460,432	2,687	171	437	1,054
미평 양지마을	111,389	119,234	592	201	103	1,158
여서동 2통	433,052	460,077	2,375	194	339	1,357
계	1,104,441	1,183,891	6,396	185	1,010	1,172

2) 2010년

(단위: 천원)

구 간	투자자원	공사금액	배관길이 (m)	m 당 평균	세대수	세대당 평균
학동11통	191,697	236,417	1,562	151	192	1,231

3) 2011년

(단위: 천원)

구 간	투자자원	공사금액	배관길이 (m)	m 당 평균	세대수	세대당 평균
여서동 1통	112,465	136,102	630	216	115	1,183
선원동25통	306,573	354,415	1,786	198	232	1,528
미평 양지초등	89,739	99,733	334	299	66	1,511
계	508,777	590,250	2,750	215	413	1,429

4) 2012년

(단위: 천원)

구 간	투자자원	공사금액	배관길이 (m)	m 당 평균	세대수	세대당 평균
미평양지초등	49,122	54,653	183	299	36	1,518

구 간	투자자원	공사금액	배관길이 (m)	m 당 평균	세대수	세대당 평균
화장동36통	446,880	528,540	2,750	192	140	3,775
엑스포및숙소	725,693	903,773	4,390	206	1,523	593
신기21,22통	463,431	592,780	2,994	198	430	1,379
웅천3,4단지	461,466	488,336	1,545	316	129	3,786
계	2,146,592	2,568,082	11,862	216	2,258	1,137

5) 2013년

(단위: 천원)

구 간	투자자원	공사금액	배관길이 (m)	m 당 평균	세대수	세대당 평균
오림동15통	343,530	464,629	2,282	204	307	1,513
안산동29통	316,941	416,374	1,781	234	162	2,570
미평동20통	283,857	382,222	1,749	219	479	798
안산동30,31,32통	828,037	1,129,042	5,346	211	623	1,812
문수동1통	118,007	156,730	694	226	130	1,206
웅천4,5단지	231,283	271,150	1,126	241	51	5,317
계	2,121,655	2,820,147	12,978	217	1,752	1,610

6) 2014년

(단위: 천원)

구 간	투자자원	공사금액	배관길이 (m)	m 당 평균	세대수	세대당 평균
문수소미마을	59,354	83,983	640	131	107	785
선원동24,25통	409,508	546,192	2,893	189	438	1,247
학동20통	176,412	225,272	1,127	200	136	1,656
신기동19,20통	402,756	576,109	2,900	199	337	1,710
여천동6통	293,271	424,041	2,197	193	151	2,808
교동11통	76,456	97,031	325	299	49	1,980
신기동23,24통	203,859	337,369	1,792	188	304	1,110
학동6,7,8통	465,735	644,732	3,320	194	296	2,178
계	2,087,351	2,934,729	15,194	193	1,818	1,614

7) 2015년

(단위: 천원)

구 간	투자자원	공사금액	배관길이 (m)	m 당 평균	세대수	세대당 평균
학동6,7,8통	92,979	129,256	666	194	59	2,191
학동17통	211,362	279,102	1,257	222	130	2,147
여천동1통	215,683	291,043	1,473	198	130	2,239
학동22통	612,699	764,231	3,565	214	461	1,658
여천동24,25통	364,602	443,687	2,022	219	185	2,398
학동5통	200,808	243,368	1,017	239	70	3,477
국동6,7,8통	637,620	1,030,024	4,691	220	502	2,052
문수동3통	154,275	207,184	875	237	103	2,011
문수동1통	168,527	195,912	704	278	71	2,759
화장동10통	440,438	564,643	2,731	207	243	2,324
화장동26통(무선2차앞)	478,718	589,455	2,606	226	185	3,186
화장동26통(안전공사앞)	626,015	742,285	3,796	196	448	1,657
화장동10통,36통	748,272	944,213	4,628	204	518	1,823
화장동27통	673,396	838,983	4,312	195	312	2,689
화장동9통	619,933	804,066	4,525	178	333	2,415
신기동8통,33통	505,508	634,194	2,555	248	277	2,290
교동11통	11,531	34,636	43	805	51	679
서강동7통	252,235	294,277	1,121	263	83	3,546
선경1차인근	177,215	208,031	1,018	204	188	1,107
계	7,191,816	9,238,590	43,605	212	4,349	2,124

8) 2016년

(단위: 천원)

구 간	투자자원	공사금액	배관길이 (m)	m 당 평균	세대수	세대당 평균
봉산동6통,7통	529,130	788,184	3,784	208	531	1,484
봉산동5통,8통	335,522	494,412	2,303	215	334	1,480
한려동5통,6통	564,492	723,707	3,644	199	359	2,016

문수동2통	348,066	446,238	2,110	211	266	1,678
선원동4통	514,003	658,978	3,513	188	290	2,272
한려동1통	652,705	796,681	3,631	219	270	2,951
한려동2통	319,009	406,380	1,930	211	212	1,917
계	3,262,927	4,314,580	20,915	206	2,262	1,907

나. 기타 사항

배관 투자재원으로 활용한 연도별 공사내역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고 회사에서 제시한 향후 계획은 금년에 국동 1통, 18통, 서강동 2통, 4통~8통, 미평동 1, 2통, 오림동 16통 등입니다. 회사는 투자재원을 활용한 도심 미공급 지역에 대한 공급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배관투자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지자체인 여수시에서 투자 계획과 공사 진행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8. 도시가스 연결·철거비 폐지에 따른 공급비용 인상요인 분석

산정기준 제2조 제7항 ‘도시가스 연결·철거에 따른 적정 안전점검비용을 공급비용에 반영하여 도시가스 연결·철거시 안전점검비용을 도시가스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징수하지 않도록 한다. (2013.06.05개정)’와 관련하여 전라남도는 철거비의 경우 공급비용에 반영하여 소비자에게 별도 징수하지 않고 있으나, 도시가스 연결 시에는 관련 재료비와 안전점검 수수료를 직접 징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의 변경을 반영하여 연결 시 별도 비용을 공급비용에 반영할 경우 공급비용 인상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최근 3개년 전입 세대수 추이

(단위: 세대)

구 분	목 포	대 화	전 남	해 양	비 고
2014년	25,789	4,262	27,861	11,258	
2015년	24,323	4,293	30,798	12,929	
2016년	25,444	5,267	30,333	15,685	

나. 공급비용 산정 시 미반영된 전입시 안전점검비용과 인상효과

(단위: 원)

구 분	전입 세대수	수수료 단가	수수료 금액	인정공급열량 (GJ)	단위당공급비용 인상효과
목포	25,444	5,000	127,220,000	5,152,811	0.0247
대화	5,267	6,000	31,602,000	6,027,000	0.0052
전남	30,333	5,000	151,665,000	9,226,695	0.0164
해양	15,685	5,000	78,425,000	4,734,126	0.0166

공급기준 개정의 취지에 따라 유추해보면 이사 및 가스기기 교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공급비용에 포함시키고 실제 발생 시점에서 별도의 수수료 징수가 필요하지 않도록 하여 민원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고객 서비스를 제고하도록 한 것이라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공급비용의 인상이 불가피하고 이사 다니는 빈도가 낮은 수요가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야기 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라남도의 경우에도 교체 시 안전점검비용에 대한 소비자 부과 방식에 대한 검토(현재 방식 대 공급비용 포함)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9.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적용 공급비용 인상요인 분석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7조 5항에 따르면 도시가스회사가 고객센터에 지급하는 지급수수료는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급여, 상여금, 제수당 및 퇴직급여를 포함),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사무실임차료, 시설투자비 및 고객센터의 운영에 수반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제비용을 포함한 적정원가에 적정이윤을 가산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결정하되 시·도지사가 별도로 검토하여 정하고 도시가스회사는 결정된 지급수수료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4개 도시가스 회사별 고객센터 운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목 포	대 화	전 남	해 양
고객센터 수	1 개소	1개소	2개소	8개소
총 근무인원	49명	40명	56명	35명
수수료산정방식	건별표준비용	건별표준비용	총괄원가보상	건별표준비용
2016년 지급수수료	1,170,761	812,346	2,066,879	1,107,144
2017년 수수료반영액	1,319,784	954,577	2,093,542	1,229,290

구 분	목 포	대 화	전 남	해 양
인정공급열량(GJ)	5,129,475	5,768,700	9,685,793	5,388,062
공급비용반영액(원)	0.2573	0.1655	0.2114	0.2282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총괄원가 보상방식으로 고객센터 지급수수료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남도시가스를 제외한 3개사의 경우 해당 고객센터에 대한 원가자료를 근거로 별도로 서비스센터 원가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나 각 사의 경우 해당 자료가 충분치 못하여 산출에 제약이 존재하였으며, 공급비용 산정 시에는 현행 체제에서 각 서비스항목별로 약정된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된 수수료 금액에 대해 검토 후 공급비용에 반영하는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각 도시가스회사별 총괄원가 보상방식에 따라 산출된 고객센터 수수료는 필요한 경우 별도의 검증 절차를 거쳐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산출된 단가를 기준으로 공급비용 인상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0. 타 시·도별 우수사례 소개, 현황 비교·분석 등

가. 타 시·도 인터넷을 통한 전출입 예약 시스템 도입

A 도시가스 사업자는 최근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고객의 전입/전출을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간편접수시스템의 사용으로 콜센터 업무가 중이 감소되고 고객들의 대기시간이 감축되며, 전입/전출 시간대 자율조정 등 고객의 편의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콜센터의 콜 수 감소 등 수수료 절감에 따른 공급비용의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 공급비용에 반영된 투자비 정산

전기, 가스, 집단에너지 등 국내의 주요 공공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적정보수방식에 따라 요금수준이 결정됩니다. 도시가스는 공급비용을 통해 적정보수를 회수하며, 적정보수는 사업자산의 가치(요금기저)에 일정률의 보수(적정보수율)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투자비에 따라 사업자산의 가치가 결정되며, 이는 곧 적정보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책정할 때 당해년도 예상 투자비에 따라 요금기저가 확정되고, 예상 투자비와 실제 발생한 투자비의 차이로 인해 공공요금인 도시가스 요금이 과도/과소하게 책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B사는 공급비용 산정시 직전년도의 예상 투자비와 실제 투자비와의 차이를 당해년도에 정산하게 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요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비 정산을 통해 배관투자 활성화 및 도시가스 보급률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본 용역 수행 시 2016년도에 승인된 투자비 대비 2016년도 실적투자비의 차이를 총괄원가에 반영하였습니다.

다. 산업용 요금제의 확대

산업용의 경우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공급열량의 급격한 감소가 적고 실물 경기에 따라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면, 사용량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공급비용 인하요인을 현행 산업용 부제에서는 요금부과 월 기준사용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하 효과에 대해 탄력적으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기준 사용량을 더욱 세분화하여(2017년 전남도시가스 산업용 IV 추가) 산업체 생산원가 절감, 요금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산업체 요금체계를 현행 요금제에서 요금변동의 기여도를 고려한 '다부제 요금제'(사용량에 따라 체감요금을 5단계 이상으로 세분화 적용)로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은 좋은 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11. 경제성이 낮은 도시 내 주택지역 시설투자 확대방안

전라남도의 경우 도시지역임에도 현재 도시가스가 미공급되고 있는 지역은 원도심이나 낙후 지역으로 투자대비 경제성이 매우 낮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의 경우 낮은 경제성으로 인하여 지역도시가스사의 경우 투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는 경제성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부담하게 됨으로 인하여 해당 지자체와 지역도시가스사간에 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공급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배관투자의 선행이 필요합니다, 다만, 배관 투자의 초기에는 1m당 공급받는 수요가 수와 공급량은 적지만 배관투자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매년 발생하기 때문에 평균공급비용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시간이 경과되면 자연스럽게 공급량의 증가가 수반되어 평균공급비용의 인하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또한 공급비용 산정기준에서는 도시가스사업의 여건 등을 감안, 배관설비의 증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급설비 이용효율 제고로 인한 원가인하요인 발생시 그 범위 안에서 필요에 따라 별도의 투자재원을 부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라남도의 경우도 이를 근거로 투자재원의 부가를 통한 배관투자의 확대를 2009년부터 대화도시가스에 적용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해양도시가스에도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도시가스사의 자체자금 및 조달능력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배관투자를 위하여 배관투자자에 대한 장기 저리의 융자 지원을 하거나 지자체에서 도시가스를 가설

하는 수요가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배관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경제성이 낮은 지역에 대한 시설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투자비 감축을 위한 보조금의 지급 및 시설분담금 증가나 투자재원을 통한 투자비 유보,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 조달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의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경제성이 낮은 지역에 대한 공급의 확대는 지속적으로 도시가스 인상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12. 도시가스 보급률 향상을 위한 방안

도시가스협회 등의 자료를 기준으로 살펴 본 2016년 12월 말 기준 도시가스 전국 보급률 현황에서 전라남도의 보급률은 45.4%로 강원도에 이어 전국최하위 수준입니다.

(단위: 원, 세대)

지 역	보급률(%)	수요가수	전체 세대수	비 고
서울특별시	97.99%	4,105,817	4,189,839	
인천광역시	91.13%	1,067,457	1,171,399	
경기도	86.94%	4,350,198	5,003,406	
수도권 소계	91.88%	9,523,472	10,364,644	
부산광역시	87.58%	1,271,083	1,451,270	
대구광역시	94.75%	942,041	994,220	
광주광역시	97.65%	572,660	586,464	
대전광역시	94.05%	570,063	606,137	
울산광역시	91.80%	418,012	455,352	
세종특별자치시	79.33%	74,845	94,343	
강원도	43.58%	301,686	692,254	
충청북도	62.93%	428,535	680,960	
충청남도	61.27%	552,855	902,294	
전라북도	65.96%	521,148	790,084	
전라남도	45.40%	382,321	842,688	
경상북도	60.28%	711,731	1,180,643	
경상남도	64.28%	890,776	1,385,684	
제주특별자치도	8.79%	23,455	266,972	

지 역	보급률(%)	수요가수	전체 세대수	비 고
지방 소계	70.10%	7,661,211	10,929,365	
전국 합계	80.70%	17,184,683	21,294,009	

(자료 : 도시가스협회)

전라남도는 지리적 특성상 도시지역보다는 농어촌 지역이 넓고 서남해안 인근의 많은 섬으로 구성되어 타 시도에 비해 보급률이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전라남도 내 미공급 지역은 원도심 지역의 단독주택 단지나 농어촌 지역의 면단위 지역 등으로 경제성이 낮아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성이 낮은 지역으로의 공급권역 확대는 공급비용 상승의 요인이 되나 보일러유(등유)나 전기 등 대체에너지에 비해 저렴하고 편리한 도시가스의 보급을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보급률 확대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제성이 낮은 지역에 대한 시설투자 확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투자비 감축을 위한 해당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과 수요가의 시설분담금 현실화와 함께 점진적인 도시가스 요금인상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신규 공급 확대에 의한 요금인상은 기존 수요가와 신규 수요가 사이에 교차보조 문제를 야기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보조금이나 투자재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급격한 공급비용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소비자의 급격한 도시가스 요금 부담을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 도시가스요금 신용카드 결제방안

현재 전라남도는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개정하여 주택용 요금에 한하여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있으며, 해당 수수료 비용을 공급비용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도시가스사별로 현재 발생하는 카드결제 건은 총공급비용 대비 미미한 수준으로 총괄원가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지 않은 수준입니다. 과거에는 신용카드 결제 시 카드사별로 카드 수수료가 1.5% ~ 2.0% 수준으로 높았기 때문에 공급비용 인상효과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었지만, 현재는 4개사 모두 건당 정액수수료로 200원 미만으로 협의하여 진행중이기 때문에 공급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또한, 카드사가 카드납부 대행 시 대행수수료가 현재 수준과 비슷하다면 신용카드 납부 대

행수수료에 따른 공급비용 인상효과는 극히 미미할 것이며, 중요한 금액이 수수료로 발생된다면 추가적으로 공급비용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첨 : 부속명세서

- 목포도시가스

1. 적정원가 명세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목포도시가스 주식회사

(단위: 천원)

과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안	비고
(A) 판매비	11,556,096	(1,306,272)	10,249,824	
급여	3,422,122	(198,471)	3,223,651	
퇴직급여	327,191	(13,663)	313,528	
감가상각비	2,813,890	(193,384)	2,620,506	
무형자산상각비	152,254	-	152,254	
복리후생비	396,902	(48,312)	348,590	
여비교통비	132,814	(2,205)	130,609	
차량유지비	94,573	(5,223)	89,350	
통신비	71,202	(1,177)	70,025	
수도광열비	82,372	(1,362)	81,010	
소모품비	520,932	(236,796)	284,136	
세금과공과	425,890	(15,000)	410,890	
지급임차료	87,202	(358)	86,844	
운반비	106,613	(1,769)	104,844	
수선비	332,595	(59,278)	273,317	
보험료	95,474	(733)	94,741	
접대비	74,207	(1,228)	72,979	
회의비	-	-	-	
광고선전비	78,068	(62,363)	15,705	
경상개발비	-	-	-	
교육훈련비	14,261	(2,895)	11,366	
도서인쇄비	66,308	(9,363)	56,945	
지급수수료	2,060,071	(252,690)	1,807,381	
대손상각비	200,000	(200,000)	-	
잡비	1,155	(2)	1,153	
(B) 영업외비용	17,200	-	17,200	
기부금	17,200	-	17,200	
(C) 영업외수익	-	-	-	
(D) 사회적배려자감면 등	-	205,060	205,060	
(E) 열량정산 반영금액	-	-	-	
(F) 법인세비용	921,242	(228,508)	692,734	
(G) 적정원가	12,494,538	(1,329,720)	11,164,818	A+B-C+D+E+F

- 목포도시가스, 계속

2. 적정투자보수 명세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목포도시가스 주식회사

(단위: 천원)

과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안	비고
(A) 영업비용	11,556,096	(1,306,272)	10,249,824	
(B) 감가상각비	2,813,890	(193,384)	2,620,506	
(C) 퇴직급여	327,191	(201,918)	125,273	
(D) 대손상각등	546,396	(494,142)	52,254	
(E) 운전자금	1,311,436	(69,471)	1,241,965	$(A-B-C-D) \times 2/12$
(F) 유형자산	40,137,187	(6,174,745)	33,962,442	
(G) 무형자산	406,562	0	406,562	
(H) 임차보증금	86,889	(48,500)	38,389	
(I) 요금기저	41,942,075	(6,292,716)	35,649,359	$E+F+G+H$
(J) 적정투자보수율	6.88%	0.01%	6.89%	
(K) 적정투자보수	2,885,543	(429,486)	2,456,057	$I \times J$

3. 적정투자보수율 명세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목포도시가스 주식회사

(단위: 천원)

과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안	비고
(A) 자본금불입액	1,988,900	-	1,988,900	
(B) 당기순이익누계	38,969,471	-	38,969,471	
(C) 배당금지금액누계	2,981,200	-	2,981,200	
(D) 자기자본	37,977,171	-	37,977,171	$A+B-C$
(E) 타인자본적수	99,870,960	-	99,870,960	
(F) 월평균잔액	8,322,580	-	8,322,580	$E/12$
(G) 자기자본보수율	4.32%	-	4.32%	
(H) 이자비용	203,204	-	203,204	
(I) 타인자본보수율	1.85%	0.05%	1.90%	$H/F \times (1-0.22)$
(J) 가중평균보수율	3.88%	0.01%	3.89%	$[(D \times G) + (F \times I)] / (D + F)$
(K) 투자보수율가산율	3.00%	-	3.00%	
(L) 적정투자보수율	6.88%	0.01%	6.89%	$J+K$

– 대화도시가스

1. 적정원가 명세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화도시가스 주식회사

(단위: 천원)

과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안	비고
(A) 판관비	7,160,203	(653,644)	6,506,560	
급여	3,529,217	(701,462)	2,827,755	
퇴직급여	431,119	12,422	443,541	
감가상각비	856,147	187,435	1,043,582	
무형자산상각비	-	-	-	
복리후생비	335,400	(2,333)	333,067	
여비교통비	5,837	(40)	5,797	
차량유지비	90,595	(630)	89,965	
통신비	43,251	(301)	42,950	
전력비	10,868	(75)	10,793	
소모품비	125,520	(874)	124,646	
세금과공과	224,228	(1,561)	222,667	
수선비	9,616	(67)	9,549	
보험료	29,491	(205)	29,286	
접대비	15,751	(110)	15,641	
경조비	3,673	(26)	3,647	
교육훈련비	3,959	(28)	3,931	
도서인쇄비	50,869	(353)	50,516	
지급수수료	1,378,895	(137,380)	1,241,515	
사무용품비	4,899	(34)	4,865	
대손상각비	8,000	(8,000)	-	
잡비	2,867	(20)	2,847	
(B) 영업외비용	-	-	-	
(C) 영업외수익	24,000	-	24,000	
(D) 사회적배려자감면 등	242,863	(18,783)	224,080	
(E) 열량정산 반영금액	567,603	-	567,603	
(F) 법인세비용	280,850	(139,903)	140,947	
(G) 적정원가	8,227,520	(812,330)	7,415,190	A+B-C+D+E+F

- 대화도시가스, 계속

2. 적정투자보수 명세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화도시가스 주식회사

(단위: 천원)

과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안	비고
(A) 영업비용	7,160,203	(653,644)	6,506,560	
(B) 감가상각비	856,147	187,435	1,043,582	
(C) 퇴직급여	431,119	(402,787)	28,332	
(D) 대손상각등	8,000	(8,000)	-	
(E) 운전자금	977,490	(71,715)	905,774	$(A-B-C-D) \times 2/12$
(F) 유형자산	11,032,728	(382,917)	10,649,811	
(G) 무형자산	-	-	-	
(H) 임차보증금	-	-	-	
(I) 요금기저	12,010,218	(454,632)	11,555,586	$E+F+G+H$
(J) 적정투자보수율	7.32%	(3.00%)	4.32%	
(K) 적정투자보수	879,688	(379,967)	499,721	$I \times J$

3. 적정투자보수율 명세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화도시가스 주식회사

(단위: 천원)

과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안	비고
(A) 자본금불입액	1,800,000	-	1,800,000	
(B) 당기순이익누계	49,894,092	-	49,894,092	
(C) 배당금지급액누계	31,710,416	-	31,710,416	
(D) 자기자본	19,983,676	-	19,983,676	$A+B-C$
(E) 타인자본적수	-	-	-	
(F) 월평균잔액	-	-	-	$E/12$
(G) 자기자본보수율	4.32%	-	4.32%	
(H) 이자비용	-	-	-	
(I) 타인자본보수율	-	-	-	$H/F \times (1-0.22)$
(J) 가중평균보수율	4.32%	-	4.32%	$[(D \times G) + (F \times I)] / (D + F)$
(K) 투자보수율가산율	3.00%	(3.00%)	0.00%	
(L) 적정투자보수율	7.32%	(3.00%)	4.32%	$J+K$

– 전남도시가스

1. 적정원가 명세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전남도시가스 주식회사

(단위: 천원)

과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안	비고
(A) 판관비	21,485,588	(2,878,506)	18,607,083	
급여	5,635,409	(204,030)	5,431,379	
퇴직급여	404,070	(9,305)	394,765	
감가상각비	3,193,673	404,607	3,598,280	
무형자산상각비	141,821	(52,055)	89,766	
복리후생비	1,439,056	(143,969)	1,295,087	
여비교통비	73,101	(2,919)	70,182	
차량유지비	132,076	(16,094)	115,982	
통신비	427,241	(108,100)	319,141	
수도광열비	108,945	(678)	108,267	
소모품비	430,364	(236,550)	193,814	
세금과공과	405,807	-	405,807	
지급임차료	194,996	(1,064)	193,932	
수선비	1,279,536	(894,879)	384,657	
보험료	37,694	(262)	37,432	
접대비	118,208	(13,179)	105,029	
회의비	17,584	(1,961)	15,623	
광고선전비	38,925	(20)	38,905	
교육훈련비	64,826	(29,343)	35,483	
도서인쇄비	31,416	(174)	31,242	
지급수수료	6,491,784	(1,224,931)	5,266,853	
용구손료	775,683	(320,773)	454,910	
대손상각비	20,251	(20,251)	-	
잡비	23,125	(2,578)	20,547	
(B) 영업외비용	230,000	(15,000)	215,000	
기부금	230,000	(15,000)	215,000	
(C) 영업외수익	-	29,856	29,856	
(D) 사회적배려자감면 등	774,628	(51,120)	723,508	
(E) 열량정산 반영금액	-	-	-	
(F) 법인세비용	1,123,856	(245,429)	878,428	
(G) 적정원가	23,614,072	(3,219,910)	20,394,162	A+B-C+D+E+F

- 전남도시가스, 계속

2. 적정투자보수 명세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전남도시가스 주식회사

(단위: 천원)

과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안	비고
(A) 영업비용	21,485,588	(2,878,506)	18,607,083	
(B) 감가상각비	3,193,673	404,607	3,598,280	
(C) 퇴직급여	99,080	(99,080)	-	
(D) 대손상각등	162,072	(72,306)	89,766	
(E) 운전자금	3,005,127	(518,621)	2,486,506	$(A-B-C-D) \times 2/12$
(F) 유형자산	45,191,654	(5,054,600)	40,137,054	
(G) 무형자산	690,612	(412,816)	277,796	
(H) 임차보증금	-	323,210	323,210	
(I) 요금기저	48,887,393	(5,662,827)	43,224,566	E+F+G
(J) 적정투자보수율	7.20%	0.01%	7.21%	
(K) 적정투자보수	3,520,179	(405,754)	3,114,425	I×J

3. 적정투자보수율 명세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전남도시가스 주식회사

(단위: 천원)

과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안	비고
(A) 자본금불입액	12,684,000	-	12,684,000	
(B) 당기순이익누계	73,000,492	-	73,000,492	
(C) 배당금지금액누계	40,503,077	-	40,503,077	
(D) 자기자본	45,181,415	-	45,181,415	A+B-C
(E) 타인자본적수	38,050,736	-	38,050,736	
(F) 월평균잔액	3,170,895	-	3,170,895	E/12
(G) 자기자본보수율	4.32%	-	4.32%	
(H) 이자비용	101,860	-	101,860	
(I) 타인자본보수율	2.43%	0.08%	2.51%	$H/F \times (1-0.22)$
(J) 가중평균보수율	4.20%	0.01%	4.21%	$[(D \times G) + (F \times I)] / (D + F)$
(K) 투자보수율가산율	3.00%	-	3.00%	
(L) 적정투자보수율	7.20%	0.01%	7.21%	J+K

– 해양도시가스

1. 적정원가 명세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해양도시가스 주식회사

(단위: 천원)

과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안	비고
(A) 판관비	9,298,126	(370,234)	8,927,892	
급여	2,275,959	(87,959)	2,188,000	
퇴직급여	246,551	(9,535)	237,016	
감가상각비	2,882,046	(22,917)	2,859,128	
무형자산상각비	92,578	(6,069)	86,508	
복리후생비	483,596	(12,823)	470,773	
여비교통비	10,462	(441)	10,021	
통신비	95,256	(3,352)	91,904	
수도광열비	15,617	(1,238)	14,379	
세금과공과	394,824	–	394,824	
지급임차료	54,929	–	54,929	
지급수수료	2,115,931	(187,182)	1,928,749	
수선비	61,718	(8,486)	53,232	
보험료	19,662	(1,230)	18,432	
접대비	50,463	(1,814)	48,649	
광고선전비	16,622	(4,094)	12,528	
도서인쇄비	15,270	(217)	15,053	
교육훈련비	12,470	833	13,303	
사무용품비	1,680	(253)	1,427	
소모품비	14,654	(707)	13,947	
차량제경비	198,020	(6,697)	191,323	
회의비	17,143	(2,780)	14,363	
경비비	44,596	–	44,596	
계량기교체비용	178,080	(13,272)	164,808	
(B) 영업외비용	101,031	–	101,031	
(C) 영업외수익	97,970	–	97,970	
(D) 사회적배려자감면 등	107,241	–	107,241	
(E) 열량정산 반영금액	–	–	–	
(F) 법인세비용	949,642	(19,261)	930,381	
(G) 적정원가	10,358,070	(389,495)	9,968,575	A+B-C+D+E+F

- 해양도시가스, 계속

2. 적정투자보수 명세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해양도시가스 주식회사

(단위: 천원)

과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안	비고
(A) 영업비용	9,298,126	(370,234)	8,927,892	
(B) 감가상각비	2,882,046	(22,917)	2,859,128	
(C) 퇴직급여	-	-	-	
(D) 대손상각등	92,578	(6,069)	86,508	
(E) 운전자금	1,053,917	(56,875)	997,043	(A-B-C-D)x2/12
(F) 유형자산	44,755,577	(1,017,181)	43,738,396	
(G) 무형자산	46,320	141,697	188,017	
(H) 임차보증금	112,000	-	112,000	
(I) 요금기저	45,967,814	(932,358)	45,035,456	E+F+G
(J) 적정투자보수율	7.32%	-	7.32%	
(K) 적정투자보수	3,366,912	(68,290)	3,298,622	IxJ

3. 적정투자보수율 명세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해양도시가스 주식회사

(단위: 천원)

과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안	비고
(A) 자본금불입액	3,066,667	-	3,066,667	
(B) 당기순이익누계	249,022,036	-	249,022,036	
(C) 배당금지급액누계	149,390,000	-	149,390,000	
(D) 자기자본	102,698,703	-	102,698,703	A+B-C
(E) 타인자본적수	-	-	-	
(F) 월평균잔액	-	-	-	E/12
(G) 자기자본보수율	4.32%	-	4.32%	
(H) 이자비용	-	-	-	
(I) 타인자본보수율	0.00%	-	0.00%	H/Fx(1-0.22)
(J) 가중평균보수율	4.32%	-	4.32%	[(DxG)+(FxI)]/(D+F)
(K) 투자보수율가산율	3.00%	-	3.00%	
(L) 적정투자보수율	7.32%	-	7.32%	J+K